

국제옵서버 확보를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

2008. 10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국제오피서버 확보를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

2008. 10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귀하

본 보고서를 「국제오피서버 확보를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10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연구책임자 : 최 수 정

연 구 진 : 엄 선 희

이 승 진

연구자문 : 김 동 욱(국방부)

안 두 해(국립수산과학원)

·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1. 연구범위	2
2. 연구방법	4
제2장 읍서버제도의 국제 동향	5
제1절 읍서버 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5
1. 읍서버 제도의 목적	5
2. 읍서버 제도의 필요성	5
3. 읍서버의 종류	5
제2절 각국의 읍서버 제도 비교	8
1. 미국의 읍서버 제도	8
2. FFA(태평양도서국 의 읍서버 제도)의 읍서버 제도	9
3. 일본의 읍서버 제도	9
제3절 국제기구의 읍서버 프로그램 현황	12
1.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12
2. ICCAT(대서양 참치 보존 위원회)	18
3. IATTC(전미 열대참치위원회)	18
4. IOTC(인도양참치위원회)	19
5.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 위원회)	19
6.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19

7. NAFO(북서대서양어업위원회)	20
제4절 옵서버프로그램 운영방법의 비교	22
1. 예산	22
2. 옵서버 프로그램 방식·시스템 비교	23
제3장 국제옵서버제도의 문제인식	26
제1절 관련법체계	26
1. 원양산업발전법 체계	26
2. 국립수산물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 지침	27
제2절 운영 및 예산	31
1.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의 운영	31
2. 예산지원 실태	32
제3절 업무내용 및 처우	36
제4절 한계 및 시사점	37
제4장 국제옵서버에 대한 병역면제 가능성 검토	39
제1절 해양관련 병역면제사례	39
1. 산업기능요원 제도	39
2.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43
제2절 국제옵서버의 병역특례 적용 가능성	45
1. 타 분야와의 형평성 고려기준	45
2. 국제옵서버 고용에 대한 특례운용기관 지정 문제	46
3. 국제옵서버 고용에 대한 병역면제자와의 형평성 문제	46
제3절 병역특례 도입 가능성	47
제5장 국제옵서버제도 정비 방안	48

제1절 도입	48
제2절 국제옵서버 자격제도 도입방안	51
1. 필요성	51
2. 국제옵서버의 자격제도화 방안	53
3. 옵서버제도의 통합관리 방안	56
제3절 국제옵서버제도 법률체제 정비 방안	58
1. 제도적 정비 방안	58
2. 법률정비 초안	60
제4절 국제옵서버제도 운영 정비 방안	61
1. 관리감독체제의 정비	61
2. 예산확보 방안	63
부록 1. 국제옵서버 관련법과 농산물품질관리사의 관련법 구조 비교	66
부록 2.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75
부록 3. 각지역수산위원회 국제옵서버운영지침	77

표 목 차

<표 2-1> 일본·북미·대양주·국제기구의 옵서버 프로그램의 종류	7
<표 2-2> 주요국의 국제 옵서버프로그램 비교	11
<표 2-3> 국제수산기구의 옵서버 프로그램 비교	21
<표 2-4> 국제 옵서버 프로그램의 연간 예산 비교	22
<표 3-1> 국제옵서버 채용 실태	31
<표 3-2> 국제옵서버 교육 교관	32
<표 3-3> 국제옵서버 운영경비	33
<표 3-4> 2005년 국제옵서버의 국제수산기구 파견현황	33
<표 3-5> WCPFC 주요국들의 국제옵서버 예산조달 방법	35
<표 5-1> 국가기술자격의 해양분야별 종목	50
<표 5-2> 원양산업발전법의 국제옵서버제도 현황	59
<표 5-3> 농산물품질관리법의 농산물품질관리사 현황	59
<표 5-4> 예산소요예상	64
<표 5-5> 원양선사의 국제옵서버 인건비 부담 증가율	65

그림 목 차

<그림 2-1> 읍서버 프로그램의 정의와 종류	6
<그림 2-2> 국제수산물기구해역도	12
<그림 2-3> 중서부태평양 협약수역	13
<그림 5-1> 우리나라의 자격체계	56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 이 연구과제는 WCPFC의 국제옵서버 승선 의무화 현안과 직접 연관되어 있음
 - 2012년 본격화 예정으로 협상 중인 국제옵서버 실시와 관련한 국내체제의 제도화를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재의 국내 제도는 ‘국제옵서버제도’를 체계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 국제옵서버제도는 2007년 8월에 제정된 ‘원양산업발전법’ 이전까지 법적 근거 없는 제도였음
 - 동 법의 도입 이후에도 실질적인 이행규칙 미정으로 법적 근거 부족, 국립수산물학원장에 대한 포괄적 위임은 제도보완 시급
- 국제옵서버 제도 연구를 통하여 현재 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국제옵서버 제도의 제도화방안 검토 및 양성화 방안 모색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주요 국제수산물기구의 국제옵서버 제도 수용동향 조사, 주요 조업국 및 연안국의 국제옵서버 제도화 동향 조사
- 현재 국립수산물학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국제옵서버의 운영 실태와 제도적 기반의 적절성 검토
- 보다 우수한 국제옵서버 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직업적 기반 마련을 위한 인센티브로써 병역면제 가능성 검토

- ‘원양산업발전법’에서의 국제옵서버제도의 이행가능성 및 개정방향 검토

2) 연구방법

- 지금까지 국제옵서버제도 연구에 관한 연구성과물은 없음
- 국제옵서버의 제도적 보장체계에 대한 법률구조를 다른 자격의 법률구조와 비교분석
 - 2004년부터 실시된 ‘농산물품질관리사’의 법적구조와 비교분석
- WCPFC의 옵서버제도 도입을 위한 비공식 작업반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기구의 동향 파악
- 국내외 국제옵서버 운영 담당 연구자와의 면담조사 및 문헌조사 실시
 - 국립수산물과학원
 - 원양산업협회
 - 일본 수산종합연구센터 원양수산연구소
- 국제옵서버의 병역특례 가능성 파악을 위해 국방부 및 병무청 병역특례 담당관과의 면담조사 및 자료수집

제2장 국제수산기구의 옵서버제도 동향

제1절 옵서버 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1. 옵서버 제도의 목적

- 옵서버 제도란 어업관리를 위해 옵서버 교육을 이수한 자를 양륙항에 배치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에 승선시켜, 어획 및 어획노력량, 어종 및 부수 어획종, 조업일수, 조업장소, 어구 및 어법 등 조업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을 감시하고 통계 및 정보를 수집하여 어업에 관련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2. 옵서버 제도의 필요성

- 조업 및 양육에 대한 독립적 정보 및 통계 확보
- 어업인 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정보적 가치화
- 생태환경, 자원생물, 사회경제적 정보 확보
- 어업인의 협동적 참여와 현실적 자료 제공
- 과학적 조사

3. 옵서버의 종류

- 과학 옵서버 : 과학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옵서버
- 어업 옵서버 : 과학 정보 수집을 주목적으로 하지만 감시목적도 포함
- 감시 옵서버 : 감시를 주목적으로 하지만 과학정보도 최소한 수집하는 ‘인스펙터 또는 컨트롤(감시)’ 프로그램

- 이 밖에 법적 권한을 갖는 인스펙터에 의한 임검(臨檢)
- 북미·캐나다에서는 대부분이 ‘어업’ 옵서버 프로그램
 - 유럽은 ‘과학’ 옵서버 프로그램이 대부분임
 - 영국, 프랑스의 인도양 영해 관련 프로그램과 가다랑어·다랑어 선망선의 모라토리엄 감시는 ‘감시’ 옵서버 프로그램이지만 과학정보도 상당 수 수집하고 있어, 오히려 ‘어업’ 옵서버 프로그램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 일본은 대부분이 과학 옵서버 프로그램이며, 감시를 포함한 어업 옵서버 프로그램이 일부 존재하고, 인스펙터(어업감독관)는 주로 단속선으로 감시활동을 수행함

<표 1> 일본·북미·대양주·국제기구의 옵서버 프로그램의 종류

어업	옵서버 프로그램의 주목적	국가·기관(해역)	종류		
			과학	어업	감시
가다랑어·다랑어 선망 어업	소형 눈다랑어 어획정보 수집	EU (대서양·인도양)			
	혼획정보 수집 및 감시	스페인·프랑스(대서양·인도양)			
	모라토리엄 감시				
	눈다랭이 프로그램	ICCAT(대서양)			
	ESTHER	스페인·프랑스(대서양·인도양)			
	신(新) 옵서버 프로그램	EU (참가국 EEZ)			
	혼획정보 수집 및 감시	IATTC (동태평양)			
	과학정보, 불법감시, 임검	FFA해역			
	과학정보(남방참다랑어)	호주(大灣)			
다랑어연승 어업	황새치 (과학정보 수집)	스페인(전 지역)			
	황새치 (혼획감시)	미국 캘리포니아			
	혼획정보 수집 및 감시	미국 하와이 앞바다			
	혼획정보 수집 및 감시	미국 대서양			
	혼획정보 수집 및 감시	캐나다 동해안 앞바다			
다랑어·가다랑어 어업 (선망·연승·기타)	과학정보 수집 및 감시	뉴칼레도니아			
	주로 과학정보 수집	SPC해역			
	과학·혼획정보 수집	일본 (전지역)			
	프랑스 영해의 외국 가다랑어·다랑어 어선 감시	프랑스 (인도양)			
	영국 영해의 외국 가다랑어 및 다랑어 어선 감시	영국 (인도양)			
	혼획정보 수집 및 감시	프랑스 (비스케이만)			
	저어 트롤어업	미국 (알래스카만)			
	연안·근해어업	캐나다 (서안)			
	과학·혼획정보 수집 및 감시	호주(연안·근해어업)			
과학·혼획정보 수집 및 감시	뉴질랜드(연근해어업)				

제2절 각국의 옵서버 제도 비교

1. 미국의 옵서버 제도

- 1970년대에 주로 외국어업과 일부 선망어업에 NOAA-NMFS의 옵서버 프로그램으로 도입
 - 1980년대 들어와 NOAA-NMFS 지역 옵서버 프로그램으로 미국 국내어업에 확대 시행되었음
- 초기 옵서버 프로그램은 혼획감시, 어획량 추정, 생물학적 자료수집에 그 목적을 두었음
- 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은 연방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부담

2. FFA(태평양도서국 의 옵서버 제도

-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에서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외국어선 입어 관리와 어업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수산기구
- FFA의 옵서버 프로그램은 다랑어·가다랑어 연승 및 선망어업을 대상으로 솔로 문제도, 뉴칼레도니아 해역의 어업감시를 목적으로 함
- 근거 법률 또는 규정은 조약규정을 따름
- 옵서버 승선율은 20%를 목표로 하고 있음(항해수 대비 비율)
- 옵서버 프로그램의 전체 예산은 1억 4천만 원 정도로 예산은 1척당 420만원 정도로 대부분 FFA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호주ODA에서 부담함
- 총 파견 옵서버 수는 191명임
- 현재 회원국간의 공해수역에서 FFA 어업관리를 포함시키려고 WCPFC와 갈등 중임

3. 일본의 읍서버 제도

- 과학읍서버 제도 운용
 - 어업활동이 자원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파악을 목적으로 어선에서의 승선조사를 통해 운영됨
- 양륙항 읍서버는 없고, 승선 읍서버인 국제읍서버 육성
- 읍서버 자격 : 자연과학대학 졸업자, 선원 간부 출신, 수산계 및 생물계 대학원생, 퇴직연구원
- 현재(2005년) CCSBT(남방참다랑어 연승)(16명), ICCAT(대서양참치연승)(9), IWC(고래류 육안)(3), NAFO(2), CCAMLR(메로개발어업 및 크릴새우 혼획)(2), 해외 선망(태평양)(1) 및 텐노우미야마(天皇海山, 북서태평양) 등 트롤어업(1) 합계 34명의 과학 읍서버를 파견하고 있고, 승선계약은 1항차 또는 3개월 이내임

〈표 2〉 주요국의 국제 읍서버 프로그램 비교

	중국	한국	대만	일본	FFA(SPC)
실시 기관	ICCAT 등의 결의(상하이수산대학)	ICCAT, CCSBT, WCPFC	ICCAT, CCSBT, WCPFC	ICCAT, CCSBT, WCPFC	감시, SPC는 과학적보, FFA는 어업감시
근거 법률	없음. ICCAT결의	국내법은 없음. ICCAT, CCASMLR 등 결의	국내법은 없음. 수산기본법(Fisheries Act)이 있음	국제어업조약의 권고. 국내법은 없음	조약규정 등
읍서버 승선률	5%	0.3-100%	2-8%	10%정도	20% 목표
파견 기간	4-6개월	2개월	승선기간은 4개월 이동을 포함하여 6개월 정도	1항차 당 3개월로 대부분 1항차(2 항차 경우도 있음)	1항차 35-64일, 연간 2-3항차
평균 연령		24-48세	23-45세 평균 30세	60세 이상	30-35세
성비		10%미만 여성	남성 100%	남성 100%	2% 여성
예산	정부와 업계 반씩 부담, 여비는 상하이 수산대학 부담	읍서버프로그램 종류별 상이 (정부: 약60%, 업계: 약 40%)	정부행정원 농업위원회 3억6000만원		1억 3,650만원, 1척 당 420만원 FFA 내셔널 프로그램 및 호주ODA 부담
인원	12~13	10	24-39		총계 191

제3절 국제기구의 오피서버 프로그램 현황

1.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 ICCAT는 1969년 FAO 주도로 발족된 기구로 현재 40여개 회원국을 확보하고 있는데 고도회유성 어종에 관한 가장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기구
- 어업감시 및 과학오피서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피서버 승선율은 5%정도이고, 자국 오피서버 승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운반선 오피서버는 업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2. IATTC(전미열대참치위원회)

- IATTC는 미국, EU, 에콰도르 등 전통적으로 선망어업이 강한 국가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최근 이들 국가들에 의한 자원보존조치가 매우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실정임
- 지역기구의 오피서버를 승선시키고 있는데 모든 어선에 승선시키고 있음(130명)
 - 지역의 특성상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인 오피서버를 승선(적은 인건비 30~40\$/일)
 - 지역기구에서 오피서버 비용 부담(회원국의 분담금)

3. IOTC(인도양참치위원회)

- IOTC는 어느 수역보다 자원보존조치를 다양하게 채택하고 있는 수역으로 EU, 일본, 미국 등은 인도양 수역에 집중되고 있는 대만 어선의 IUU어업을 규제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중임
- 현재 운반선에 대해 오피서버를 승선시키자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EU측의 주장에 대해 한국 및 일본 등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인 승선조건으로 협의 중임

4.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 CCSBT는 남방참다랑어 단일 어종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수산기구로 어업관리가 비교적 엄격한 기관임
- 기존 TAC를 조정하기 위하여 자원관리절차(Management Procedure, MP)를 도입
- 읍서버 승선율이 20%로 높은 편이고 자국인 승선
- 분쟁이 많은 것이 특징임

5.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 동 기구는 중서부태평양 수역의 다랑어 및 다랑어류의 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 1995년 UNFSA 협약 채택 후 만들어진 협약으로 공해조업의 기본 원칙인 기국주의에 큰 수정을 가하고 있음
- 2012년부터 기구의 국제 읍서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 목표 읍서버 승선율 5%

6.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 CCAMLR에서는 협약수역 내 연안국들의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IUU어선으로 간주하는 어선명단작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을 정도로 해당 수역 내에서의 IUU 조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CCAMLR의 자원보존조치를 위한 조업규제조치는 매우 광범위한데, 특히 VMS, 읍서버제도, 어선등록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읍서버제도는 주로 과학읍서버의 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들의 부수어획에 대한 감시가 생물다양성 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음
 - 읍서버 승선율이 100%이고 반드시 기구읍서버를 승선시키고 있음
 - 읍서버 운영비는 기구에서 부담하는데 이는 회원국분담금으로 정부와 업계에서 부담하고 있음

7. NAFO(북서대서양어업위원회)

- 캐나다의 200해리 밖 조지 뱅크의 남서부를 관리수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 MRAG가 EU의 옵서버 제도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데, MRAG는 NAFO 관리수역에서의 모든 EU어선에 대해서 옵서버를 승선시키도록 하고 있고, NAFO의 보전 및 관리규제조치에 따라서 어선의 조업활동의 감시 및 감독이 주된 목적임
- MRAG는 모든 옵서버들에게 과학장비와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옵서버들로부터 모든 자료를 담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
- 자국 옵서버를 승선시키고 있고 옵서버 운영비용은 정부와 업계가 분담하고 있음

〈표 3〉 국제수산기구의 옵서버 프로그램 비교

	기관의 옵서버 프로그램 여부	커버율	목적	예산 부담 주체
ICCAT	자국 옵서버 승선	5%	어업 감시 과학옵서버	
IATTC	기구 옵서버 파견	100%	어업감시	IATTC(회원국분담금, 정부·업계)
IOTC	자국 옵서버 승선	5%	어업감시(IUU) 운반선 옵서버	운반선 : 업계
CCSBT	자국 옵서버 승선	20%		운반선 : 업계담당
WCPFC		5%		
CCAMLR	기구 옵서버 파견(반드시 외국인 승선)	100%	어업감시 과학옵서버	CCAMLR(회원국분담금, 정부·업계)
NAFO	각국 파견	5~10% 목표		정부·업계
FFA	기구 옵서버 파견	20%	어업감시	FFA(회원국분담금), 호주 ODA

8. 옵서버 예산

- 각종 옵서버 프로그램에서 옵서버 1명당 1개월간 필요한 제반 예산(추정)은
 - 북미, 유럽·일본의 원양어업, 근해어업(장기항해의 경우)은 1,500만~2,300만원
 - 미국·캐나다·프랑스의 연안, 근해어업(단기항해의 경우)은 800~1,000만원 내외
 - IATTC의 경우에는 옵서버의 대부분이 개도국 출신이므로 평균 경비는 600만 원
 - 이는 모든 옵서버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 경비에는 수산 컨설팅 회사, 읍서버 회사, 대리점 등에 대한 지불, 읍서버의 급료, 보험료, 여비, 기자재 비용 등 모든 제반 경비가 포함됨

〈표 4〉 국제 읍서버 프로그램의 연간 예산 비교

	읍서버 프로그램의 종류(해역)	연간 읍서버 수(명)	연간 평균 승선월수(개월)	연간 총 파견인월(인월)	연간 예산(억원)	비용 부담 주체
근해·원양어업(1항해는 1개월에서 4개월)						
미국	하와이 다랑어 연승	30	4	120	28	정부
	저어 트롤(알래스카만, 북태평양)	300	3	900	154	업계(79%) 정부(21%)
스페인 프랑스	퀴노래미(대서양)	22	1.3	29	5.7	ICCAT
	ESTHER(선망, 대서양·인도양)	3	3.9	12	2.1	정부
	선망 혼획(대서양·인도양)	12	2	24	4.1	ICCAT
	선망 모라토리엄(대서양)	18	1.3	54	8	선망업계
스페인	황새치 연승	2	3.5	7	1.1	정부
일본	다랑어·가다랑어 어업	21	2	42	8	정부
		21	2.5	53	8	정부
연안·근해어업(1항차는 2주 미만)						
미국	다랑어 연승(대서양)	9	4	36	3.9	정부
	황새치 유망(캘리포니아)	20	5	100	8.8	정부
IATTC	다랑어·가다랑어 선망	130	5	650	39	업계(67%) IATTC(33%)

제3장 국제옵서버제도의 문제인식

제1절 관련법체계

- 국제옵서버제도에 관해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 3에 국제옵서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명기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이행절차가 부재
- 과거 2002년 국제옵서버프로그램 운영 방안이 수립된 그 시점부터 동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되어 왔으나, 법적 근거의 부족으로 안정적인 국제옵서버양성에 어려움이 많았음
- 원양산업발전법에서는 ‘국가가 지정한 자’를 국제옵서버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 법에서는 국제옵서버를 자격증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함
- 국립수산과학원의 원장이 채용하여 양성한 자를 국제옵서버로 임명하도록 한 ‘국제옵서버 운영 지침’의 채용계약관계와는 전혀 일치한다고 볼 수 없음
- 아무런 법적 보완장치 없이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체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선발절차와 자격부여 절차 모두 해당 프로그램에 선발된 자들에게 아무런 법적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함
- 국제옵서버의 채용에 대해서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 내부 인력채용 규정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옵서버의 국가지정자격 부여와는 다른 인력 채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국제옵서버 운영 지침’에서는 기본 전제에서 국제옵서버의 임명에 대해 원장과의 근로계약 체결에 의한 인력채용으로 보고 있음
 - 국제옵서버가 근로계약 체결에 의해 채용되었다 해고되는 형태의 업무수행형태를 취하게 될 경우 해상에서 한달 이상 근무해야 할 과학전문인력을 확보하기에는 불안정적인 고용형태라는 것이 문제임

제2절 운영 및 예산

- 현재의 국제옵서버 제도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인력채용 시스템 속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원의 인력운영계획이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고 봐야 함
- 국제옵서버의 교육은 ‘국제옵서버 운영 지침’에 따르며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외자원팀장의 소관으로 되어 있음
- 국립수산과학원이 2004년부터 국제옵서버 프로그램 운영을 맡으면서 운영경비 지출이 매년 1억씩 지원되었음
- WCPFC가 5% 승선의무비율을 정할 경우 승선시켜야 할 국제옵서버 인원은 최소 30명 선일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의 옵서버 양성 역량으로는 모든 국제옵서버를 WCPFC에만 투입해야 할 정도로 국립수산과학원의 인력양성 역량이 약한 상태임
- 예산지원 측면에서 업계와 정부간 가장 중요한 입장차를 보이는 것은 파견하는 옵서버의 비용을 어느 측에서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임
- 우리나라의 국제옵서버 양성에 관한 예산은 국가예산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 지원된 사업예산의 일종이며,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의 의무도입화를 위한 국가옵서버 양성 준비단계의 지원이라 할 수 있음
-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 옵서버가 실제 활동하는 지역수산기구의 평균 옵서버 고용 비용에 비해 비쌀 경우, 그리고 해당지역수산기구가 자국 외 외국인 국제옵서버 고용에 대해 허용할 경우 그러한 비용에 대해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제3절 업무내용 및 처우

- 국제옵서버제도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원양산업발전법 어느 곳에도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다만 동 법 시행령을 통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포괄위임하고 있음
- 보수에 관해서는 동 지침 제19조에 따라 보수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국제옵서버가 지급받는 보수와 여비는 대개 1회 출항에 월별 350~450만원 정도 받음

- 다른 국가들의 대부분 일당은 10만원~20만원 사이로 우리나라 국제옵서버들이 승선 시 책정된 56달러는 높은 보수라 볼 수 없음
- 다만 WCPFC의 의무승선비율 도입시 도서 연안국의 매우 싼 국제옵서버의 고용 문제는 보수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입장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고용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임

제4절 한계 및 시사점

- 우리나라 국제옵서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아무런 법적 보장 없이 국립수산과학원이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는 데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체 예산에 따라 할당된 예산 총 1억원을 바탕으로는 국제옵서버를 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WCPFC 등의 국제수산기구가 채택할 의무승선비율을 충족시키기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임
- 국립수산과학원은 포괄적 위임입법으로 구체적 이행규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 고용계약을 통해 국제옵서버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바 불안정한 고용계약 및 권리의무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국립수산과학원의 예산문제나 고용의 안정 등을 위해서 2007년 8월에 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의 제21조에 근거한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의 양성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옵서버 선발 후 자격 시험 통과시 수료증을 자격증으로 바꾸고 필요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원장이 부여한 국제옵서버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이러한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행의무를 국립수산과학원

의 포괄위임사항으로 규정한 지침을 폐지하고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국제옵서버 프로그램 이행절차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러한 법적 체계의 재정비를 통해 법적 근거가 있는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보다 명확해 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국제옵서버의 예산지원에 대해 모든 경비를 정부부담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업계가 전부 부담해야 할지는 각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정형화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그런데 국제수산물기구들이 전격적으로 의무승선비율을 채택할 경우 우리 정부입장에서는 빠른 시일내 필요한 수요예측 하에 옵서버를 양성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제4장 국제옵서버에 대한 병역면제 가능성 검토

제1절 국제옵서버 고용에 관한 특례운용기관 지정

- 산업기능요원제도는 2012년에 최종폐지를 앞두고 올해부터 선발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에 들어가고 있음. 정부는 2007년 2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전략’을 통해 2012년까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였으므로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다시 부활하지 않는 한 국제옵서버 고용에 관한 특례운용기관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제2절 병역면제자와 병역필한자 사이의 형평성

- 국립수산과학원은 2002년 이래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등 국제수산기구의 관할수역에서 조업하는 회원국의 조업선에 옵서버 승선을 의무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2002년부터 국제옵서버 프로그램 사업으로 매년 수명씩의 인원을 선발하여 채용하였음
 - 국제옵서버의 직종은 승선 시 월 최소 US\$3,000에서 최대 US\$4,000까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인기직종을 알려져 있어서 병역을 필한 자를 채용에 차별하거나, 병역미필자를 우대할 경우 여론을 악화시키거나 소송의 대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병무청 실무관계자와의 면담결과 2008년도부터 시행될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경우 현재 해운계통에서 요구하는 인원에 대한 공급이 모자라 신설한 제도로써, ‘국제옵서버’를 위한 병역대체제도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3절 국제옵서버의 병역특례 도입 시 필요한 논리적 근거

- ‘국제옵서버’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2007년도 병역법 개정에서 인정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논리와 관련하여 병역법 개정에 관한 국회 바다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전시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국가의 상선대는 육·해·공군 다음으로 국방의 제4군으로서 국가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함
 - 둘째,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을 살려 동북아 물류거점국가 및 해양강국으로 발전하려면 강력한 국가선대 제4군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선근무 인력을 국가경제무역전쟁의 제1선에서 복무하는 현역 제4군으로 인정해야함
 - 셋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 및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이들 물적 요소에 관한 법에 필요한 인적 요원의 확보를 보장하는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가 반드시 필요함
- 따라서 국제옵서버 제도에 대한 병역대체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제옵서버’ 제도가 대한민국의 안보에 절대적으로 긴요하다는 점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되어야 함

제5장 국제옵서버제도 정비방안

제1절 도입

- 국제옵서버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체제는 앞서 제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근거 조문은 있으나 이행가능한 절차 및 내용의 불비로 인해 제도 보완이 필요함
- 한편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정의)에서는 「6. “국제옵서버”란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그런데 현재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옵서버’는 국가가 지정한 자라 할지라도 그 외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하부 법령에서 특칙하고 있지 않았음
- 국제옵서버가 자격으로써 국가가 인정한 자격으로서 운용되는 것을 근간으로 ‘국가 지정자’라고 한 것은 국가공인이상의 자격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임
- 국제옵서버를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할 것인지 또는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해당 업무의 성격과 공적 기여 등의 사회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제2절 국제옵서버자격제도 도입방안

- 국제옵서버제도를 현재의 국립수산과학원의 단순노무계약 수준에 방치할 경우 국제수산기구의 국제옵서버 의무화에 대응하기 어려움
 - 국립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국제옵서버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세워 집행하여야 함
- 국제옵서버제도를 자격제도화 할 경우 기본적으로 자국의 원양어업의 과학적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어업준수 및 감시의 기능까지 수행하게 됨
 - 국제옵서버의 공공적 성격과 주요 활동지가 외국 또는 공해라는 특수한 지역이 될 것이므로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됨

제3절 국제옵서버제도 법률체제 정비방안

- 국제옵서버제도는 원양산업발전법이라는 개별법령에 근거한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바 국가자격으로 인정하여 국제수산기구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제옵서버’에 관한 내용은 제2조 6 및 제21조 3, 두 조항과 동 시행령의 권한위임 조항밖에 없음
 - 원양산업발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선발절차를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보완하지 못함으로써 구체적인 제도 활성화 및 필요한 예산지원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함
- 특히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권한위임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포괄위임입법의 형태를 띠고 있는바 문제의 소지가 큼
 - 원양산업법을 포함한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모두 개정되어야 함
 - 원양산업법에서는 현재의 정의 및 제도도입만 규정한 조항으로는 제도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업무의 범위, 자격증 제도의 명시, 시험 및 자격부여, 자격취소, 자격지원 자격 제한(연령, 교육배경 등), 예산지원 근거를 최소한 명기해야 함
 - 원양산업법 시행령에서는 국제옵서버 자격 시험 실시, 방법, 선발자 공고, 해당 자격의 관리·운영 기관 선정과 권한위임을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여기서 국제옵서버 제도의 고유한 업무특성을 고려한 절차를 포함시켜야 함. 해상근무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격시험과정에 승선실습과정을 의무적으로 수료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해상에서의 안전보장 및 신변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법률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 국제옵서버의 승선가능성 및 우리나라 국제옵서버의 타국어선 승선가능성도 감안하여 제도보장할 필요가 있음
- 국제옵서버를 국가자격제도로 승격시켜 운영하게 될 경우 이들의 자격발생 및 상실, 자격응시시험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규정이 포함되어야 함. 국제옵서버가 수행할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 명시하여 이들의 업무가 과도하게 또는 불합리한 명령

에 의해 변경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여야 함

- 현재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위임으로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업무가 매우 불분명하여 해당 기관의 장, 개인적인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별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4절 국제옵서버제도 운영체제 정비 안

- 국제옵서버 제도를 양성화할 경우 국제수산기구 수요를 해당 수역에서 커버리지를 20%까지 높여 갈 경우 200-300여명 수준까지 국제옵서버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국립수산과학원 인력 중 국제옵서버 업무 전담자는 1명에 불과하며, 그 외 외자원팀 소속 연구자들은 자원관리 관련 연구부담이 매우 높은 상태이므로 전담기관 또는 부서 설치가 검토되어야 함. 현재 국제옵서버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원양협회, 해양수산기술센터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국립수산과학원이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별도의 시험운영기관을 두어 관리하는 것보다 이미 국가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그 선발 관련한 일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선발과정에서 객관적일 수 있다는 점임. 따라서 자격시험절차 및 시험선발에 관한 운영은 다른 기타 국가자격시험과 마찬가지로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그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실제 국립수산과학원에 별도의 센터를 만들어 국제옵서버 운영의 전반을 맡길 경우 정부예산으로 모집, 계약, 운영, 교육 및 재교육 전반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리하게 될 것임. 그런데 민간컨설팅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게 될 경우 민간컨설팅 회사는 모집, 계약, 운영까지의 업무를 주관하게 될 것인데, 결국 교육 및 재교육과 같은 실질적인 업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맡게 될 것임
- 원양협회는 국제옵서버의 모집에서부터 시작되는 운영체제에 대해서는 원양협회가 민간컨설팅제도를 대신한다면 효율적인 업무 분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해양수산기술센터는 원양협회와 마찬가지로 추가비용 지출이 최소화될 수 있으나 원양협회에 비

해 원양어업과 국제옵서버제도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음

- 예산의 소요는 과거 국립수산과학원에 일임하여 소인원을 양성하던 체제와 달리 기본적으로 200명 이상의 국제옵서버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고려하여 작성해야 함. 앞으로 원양산업발전법체제가 개정될 경우 전담부서 설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험제도 개발, 국제 옵서버 인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예산확보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결국 국제옵서버 제도 운영에서 가장 많은 예산소요분야는 국제옵서버 인건비부분으로 향후 인건비가 100억대로 증가할 경우 모든 예산을 정부지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 부담의 원칙으로 원양선사에 전가시킬지 아니면 일부 분담체제로 갈 것인지 협의하여야 할 것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 이 연구과제는 우리나라 다량어 생산량의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옵서버 승선 의무화 현안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 주요 아시아 조업국들은 국제옵서버 승선 의무화를 가능한 한 늦추어 2012년부터 의무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FFA 연안도서국들은 2008년부터 국제옵서버 승선을 시작하여 2012년에는 본격화하자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 연안국들이 점진적인 의무화 속에 2012년 본격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최대한 협상한다 할지라도 2012년에는 최소비율 5%를 승선시키는 방향으로 컨센서스가 모여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키느냐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으나, 조업국 입장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국제수산기구의 국제옵서버 승선 의무화 동향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제옵서버 제도의 수용은 매우 미진한 상태로 2002년부터 ‘국제옵서버프로그램’이 수립되어 운영되어 오기는 하나 그 법적 근거 부족 및 예산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제도 양성이 어려운 실정인 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은 2007년 8월에 제정된 ‘원양산업발전법’ 이전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국립수산과학원 내 자체 사업으로 운영되어 왔다. 더 나아가 예산 지원측면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사업 예산이었기 때문에 연간 5명의 국제옵서버를 양성하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는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양성된 국제옵서버는 총 19명이나 그 중 현직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옵서버 제도 연구를 통하여 현재 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국제옵서버 제도의 제도화방안을 검토하고

양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이 연구과제는 지난 5년간 국립수산과학원이 운영하여 왔던 국제옵서버 제도가 WCPFC 등 국제지역수산기구의 승선의무화 조치에 따라 양성화되기 위해서 현재의 열악한 선상근무 및 해상안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제고시킬 방안으로 병역면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 과거 해양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통하여 해상에서 3년간 근무할 경우 군복무한 것으로 대체해주던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2012년을 기점으로 이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대신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2008년부터 실시될 예정인데, 이 제도를 통하여 700-800여명 정도의 해양수산계 출신자의 군복무 대체 제도가 계획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제옵서버 지원자’에 대해 군역이 면제 또는 대체될 수 있을지는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현재의 국제옵서버 제도가 국립수산과학원의 단순노무계약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한 군복무 대체제도나 국제옵서버 자격제도같은 체계화된 제도접근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이 연구과제를 통하여 국제옵서버 제도의 국내수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이 연구과제는 국제수산기구의 국제옵서버 승선 의무화 동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바 이에 대한 연구는 주요 국제수산기구의 국제옵서버 제도 수용동향 조사 및 주요 조업국 및 연안국의 국제옵서버 제도화 동향 조사를 기초로 한다.
 - WCPFC를 비롯하여 현재 국제옵서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CCSBT 및 CCMLR과 같은 국제수산기구의 옵서버 의무화 경향, 승선커버리지, 커버리지 계산방법, 예산부담 방식 등을 검토함으로써 WCPFC의 국제옵서버 수용 방향을 검토하도록 한다.

- 또한 주요 조업국인 일본, 미국, 대만 등의 국제옵서버 도입 현황을 검토하여 현재까지 각국이 수용하고 있는 국제옵서버 제도의 수용 정도를 현재 우리나라 동향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국제옵서버 제도의 국내 수용 방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국제옵서버의 운영 실태와 제도적 기반의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 국제옵서버 제도를 현재와 같이 국립수산과학원에 포괄적 위임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기존의 국립수산과학원이 담당하고 있는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제옵서버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보다 우수한 국제옵서버 인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직업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인센티브로써 병역면제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다만 이러한 인센티브가 남녀평등의 고용문화를 감안하여 병역을 대신한 국제옵서버로서의 활동은 이미 병역을 필하거나 병역의 의무가 없는 여성과의 처우적 측면에서의 평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국제옵서버의 성격상 승선원이나 어선원과 같은 지위에서 병역특례를 검토할 경우 옵서버의 기본적인 업무인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무시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 2007년 도입된 ‘원양산업발전법’에서의 국제옵서버제도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해당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시하지 않고 해당 시행령에서 포괄적으로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그 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바 부적절한 법률규칙이 될 수 있다.
 - 이미 동 법 제2조에서 ‘국제옵서버는 … 국가가 지정한 자’라고 지정하고 있는 바 이를 이행할 적절한 하부법령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자격으로서 법적 근거도 가지지 못한 국제옵서버 자격을 공히 국가자격의 범위 안으로 끌어들여 국내법적으로 인정받는 국가자격의 지위를 갖추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인 국제자격증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 지금까지 국제옵서버제도 관련 국내 연구 성과물은 전혀 없는 상태로 국제옵서버의 도입이 매우 체계화되지 못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제옵서버의 제도적 보장체계에 대한 법률구조를 다른 자격의 법률구조와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하여 국가자격에 대한 구조를 분석하고 현재 원양산업발전법에 명시된 국제옵서버의 국가자격을 어떠한 수준에서 보장할 것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 생긴 ‘농산물품질관리사’의 법적 구조와 비교분석하여 기존의 포괄적 위임조항을 개정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되어야 할지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따른 초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국제지역수산기구 및 다른 국가들이 국제옵서버제도 수용을 위하여 취하고 있는 제도적 조치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WCPFC의 옵서버제도 도입을 위한 비공식 작업반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해외 출장을 통하여 주요 조업국인 일본의 국제옵서버 승선 의무화 동향에 대한 국내 대응방안을 조사하는 등 직접적인 면담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옵서버의 제도적 문제점과 이행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으로서의 출장을 통하여 국제옵서버 운영 담당 연구자와의 면담조사 및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국제옵서버 제도의 실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국제옵서버의 병역특례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병무청 병역특례 담당관과의 면담조사 및 자료수집을 통해 기존의 해양수산관련 병역특례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향후 개선방향 등을 협의할 것이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제옵서버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상태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원양선사 및 원양협회와의 면담조사를 통해 예산분담에 대한 업계의견 청취 및 기존 국제옵서버의 선상 조사 실태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2장 읍서버제도의 국제 동향

제1절 읍서버 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1. 읍서버 제도의 목적

- 읍서버 제도란 어업관리를 위해 읍서버 교육을 이수한 자를 양륙항에 배치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에 승선시켜, 어획 및 어획노력량, 어종 및 부수 어획종, 조업일수, 조업장소, 어구 및 어법 등 조업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을 감시하고 통계 및 정보를 수집하여 어업에 관련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읍서버 제도의 목적은 기존 어업관리의 효율화, EEZ에서 조업하는 국내외 어선의 어업활동 감시·감독, 어업관리 및 어업자원보전에 필요한 직접적인 정보관리와 과학적 정보의 제공, 읍서버 제도의 목적은 지역 사정과 감시·감독의 우선순위, 재정적 지원 사정에 따라 정해진다.

2. 읍서버 제도의 필요성

- 읍서버 제도는 조업 및 양육에 대한 독립적 정보 및 통계 확보, 어업인 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정보적 가치화, 생태환경, 자원생물, 사회경제적 정보 확보, 어업인의 협동적 참여와 현실적 자료 제공 및 어업자원 및 어업환경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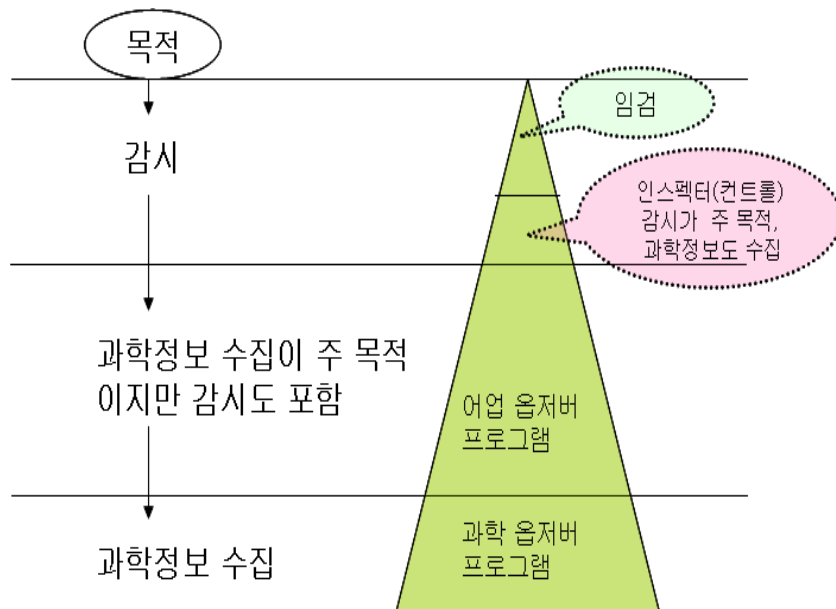
3. 읍서버의 종류

- 과학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 읍서버, 과학 정보 수집을 주목적으로 하지만 감시목적도 포함한 어업 읍서버, 감시를 주목적으로 하지만 과학정보도 최소한 수집하는 ‘인스펙터 또는 컨트롤(감시)’ 프로그램의 감시 읍서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밖에 법적 권한을 갖는 인스펙터에 의한 임검(臨檢)이 있는데, 이는 법적 권한을 갖는 인스펙터(어업감독관)가 실시하는 것으로 과학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과학’ ‘어업’ 옵서버 프로그램과는 이질적인 타입이다.

- 북미·캐나다에서는 대부분이 ‘어업’ 옵서버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고 유럽은 목적에 따라 과학·어업 옵서버 프로그램이 혼재되어 있지만, ‘과학’ 옵서버 프로그램이 대부분 이다. 영국, 프랑스의 인도양 영해 관련 프로그램과 가다랑어·다랑어 선망선의 모라토리엄 감시는 컨트롤 프로그램이지만 과학정보도 상당수 수집하고 있어, 오히려 ‘어업’ 옵서버 프로그램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다.
- 일본은 대부분이 과학 옵서버 프로그램이며, 감시를 포함한 어업 옵서버 프로그램이 일부 존재하고 인스펙터(어업감독관)는 주로 단속선으로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2-1〉 옵서버 프로그램의 정의와 종류



〈표 2-1〉 일본·북미·대양주·국제기구의 읍서버 프로그램의 종류

어업	읍서버 프로그램의 주목적	국가·기관(해역)	종류		
			과학	어업	감시
가다랑어· 다랑어 선망 어업	소형 눈다랑어 어획정보 수집	EU (대서양·인도양)			
	혼획정보 수집 및 감시	스페인·프랑스(대서양·인도양)			
	모라토리엄 감시				
	눈다랭이 프로그램	ICCAT(대서양)			
	ESTHER	스페인·프랑스 (대서양·인도양)			
	신(新) 읍서버 프로그램	EU (참가국 EEZ)			
	혼획정보 수집 및 감시	IATTC (동태평양)			
	과학정보, 불법감시, 임검	FFA해역			
	과학정보(남방참다랑어)	호주(大灣)			
다랑어연승 어업	황새치 (과학정보 수집)	스페인(전지역)			
	황새치 (혼획감시)	미국 캘리포니아			
	혼획정보 수집 및 감시	미국 하와이 앞바다			
	혼획정보 수집 및 감시	미국 대서양			
	혼획정보 수집 및 감시	캐나다 동해안 앞바다			
	과학정보 수집 및 감시	뉴칼레도니아			
다랑어·가다 랑어 어업 (선망·연승 ·기타)	주로 과학정보 수집	SPC해역			
	과학·혼획정보 수집	일본 (전지역)			
	프랑스 영해의 외국 가다랑어·다랑어 어선 감시	프랑스 (인도양)			
	영국 영해의 외국 가다랑어 및 다랑어 어선 감시	영국 (인도양)			
	혼획정보 수집 및 감시	프랑스 (비스케이만)			
	저어 트롤어업	미국 (알래스카만)			
	연안·근해어업	캐나다 (서안)			
	과학·혼획정보 수집 및 감시	호주(연안·근해어업)			
	과학·혼획정보 수집 및 감시	뉴질랜드(연근해어업)			

제2절 각국의 옵서버 제도 비교

1. 미국의 옵서버 제도

- 미국에 옵서버 프로그램의 도입은 1970년대에 주로 외국어업과 일부 선망어업에 NMFS의 옵서버 프로그램으로 도입하였는데 1980년대 들어와 NMFS지역 옵서버 프로그램으로 국내어업에 확대 시행되었다. 초기 옵서버 프로그램은 혼획감시, 어획량 추정, 생물학적 자료수집에 그 목적을 두었고 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은 연방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 미국의 옵서버 관련법은 매그너슨-스티븐어업보존관리법(the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Sustainable Fisheries Act), 해양포유류보호법(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위기종법(the Endangered Species Act) 등이 있다.
- 미국에서 옵서버는 미국어선과 선상가공 능력이 있는 어선의 활동에 대해 감시 감독, 어업 생산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기록, 미국의 해양자원관리에 기초적인 자료의 제공과 보완 조사, 어획된 어종, 무게, 어종간의 경합관계 등 기초적인 생물학적 자료 수집 등을 담당하고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옵서버의 신분은 연방 옵서버의 경우 연방공무원이지만 대부분 옵서버는 필요한 경우 옵서버 서비스를 전문 옵서버 공급회사와의 계약으로 충당하고 있다. 알래스카의 경우 정부가 인정한 옵서버 공급회사와 계약을 통해 옵서버를 충당하고 있다. 옵서버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그리고 선주나 가공선들은 이들 회사와 직접계약을 체결하여 옵서버를 공급받는다. 연방정부의 옵서버 프로그램은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알래스카 저서어업/패류채취업의 옵서버 프로그램은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20:80)하여 운영되고 있다.

2. FFA(태평양도서국 의 읍서버 제도)의 읍서버 제도

- FFA는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에서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외국어선 입어관리와 어업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수산기구로써 회원국은 호주, 뉴질랜드, 피지, 파푸아뉴기니, 키리바스, 마셜아일랜드, 솔로몬아일랜드, 바누아투, 나우루, 투발루, 통가, 사모아, 마이크로네시아와 자치령인 팔라우, 니우에, 쿡아일랜드 등이 있다.
- FFA의 읍서버 프로그램은 다랑어·가다랑어 연승 및 선망어업을 대상으로 솔로몬제도, 뉴칼레도니아 해역의 어업감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근거 법률 또는 규정은 FFA의 조약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읍서버 승선율은 20%를 목표로 하고 있다(항해수 대비 비율). 총 파견 읍서버 수는 191 명으로 읍서버는 1항차 당 35-64일 승선, 연간 2-3회 항해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30-35세, 여성 읍서버의 비중은 2%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 읍서버 모집은 FFA에서 하고, 교육 및 훈련은 SPC와 FFA공동으로 지역프로그램(연1회), 내셔널 프로그램(3-5주)을 실시하고 있다. 읍서버 프로그램의 전체 예산은 1억4천만 원 정도로 예산은 1척당 420만원으로 FFA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호주ODA에서 부담한다. FFA는 현재 FFA의 읍서버프로그램에 회원국간의 공해수역에서의 어업관리를 포함시키려고 WCPFC와 갈등 중이다.

3. 일본의 읍서버 제도

- 일본은 어업활동이 자원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읍서버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동 제도는 과학 읍서버 체계정비 사업으로 해양수산자원개발촉진법에 따라 해양수산자원개발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1990년부터 10년간 어선과학조사원 등의 육성사업을 위탁받아 과학읍서버를 양성하였다. 2000년부터 수산청으로 위탁받아 과학읍서버의 모집, 육성 및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읍서버 승선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 일본 읍서버의 특징은 양륙항 읍서버는 없고 승선읍서버인 국제읍서버를 육성 및

운영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옵서버는 자연과학대학 졸업자, 선원 간부 출신, 수산계 및 생물계 대학원생, 퇴직연구자 등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다. 옵서버 교육 훈련은 원양수산연구소 및 수산관련 대학에서 실시하고 관리하는 해양수산자원개발센터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다.

- 주요 국제 수산기구에 파견된 국제 옵서버 현황을 보면 2005년 현재 CCSBT(남방 참다랑어보존 위원회) 16명, ICCAT(대서양 참치 보존 위원회) 9명, IWC(국제포경 위원회) 3명, NAFO 2명,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2명, 해외 선망(태평양) 1명 및 텐노우미야마(天皇海山, 북태평양) 등 트롤어업 1명 등 합계 34명의 과학 옵서버를 파견하고 있고 승선계약은 1항차 또는 3개월 이내이다.
- 일본의 옵서버 수요는 국제어업조약 및 신규 출범한 WCPFC(북서대서양어업위원회)의 옵서버 배치의 필요성 및 배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급격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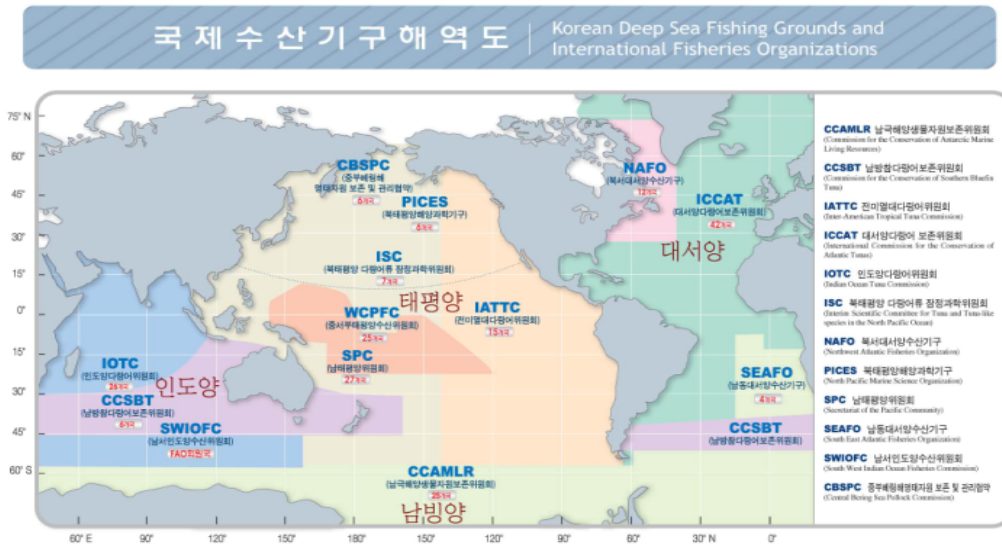
〈표 2-2〉 주요국의 국제 읍서버프로그램 비교

	중국	한국	대만	일본	FFA(SPC)
실시 기관	ICCAT 등의 결의(상하이수산대학)	ICCAT, CCSBT, WCPFC 등이 결의	ICCAT, CCSBT, WCPFC가 결의(어업서)	ICCAT, CCSBT, WCPFC 등이 결의(원양수산연구소)	감시, SPC는 과학적보, FFA는 어업감시
근거 법률	없음. ICCAT결의로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실시	국내법은 없음. I C C A T , CCASMLR 등 지역어업조약의 결의에 따라 실시	국내법은 없음. 수산기본법(Fisheries Act)이 있음	국제어업조약의 권고. 국내법은 없음	조약규정 등
읍서버 승선률	5%	0.3-100%	2-8%	수%-10% 정도(어업에 따라 다름)	20% 목표
모집 기관	수산청과 외무성, 상하이 수산대학	국립수산진흥원 원양어업과(NFRDI)	인재과건회사 위탁	해양수산자원개발센터	FFA
응모 자격		자연과학 이학사(23-55세)	고졸로 어업경험이 있거나 수산계 대학의 학사, 연령제한 없음	20-65세(어업) 경험자가 바람직함	고졸이상, 영어력, 범죄력 없을 것
훈련 담당 기관(기간)	상하이 수산대학의 해양학원(10일 내외)	국립수산진흥원 원양어업과(NFRDI)(3주)	어업서 원양어업조의 읍서버훈련소(1개월)	해양수산자원개발센터가 담당, 원양수산연구소 등이 강습 등을 실시(1-2일간)	SPC, FFA공문(지역프로그램: 연1회)(내셔널 프로그램: 3-5주)
파견 기간	4-6개월	2개월	승선기간은 4개월 이동을 포함하여 6개월 정도	1항차 당 3개월로 대부분의 경우 1항해지만 2항해를 하는 경우도 있음	1항해 35-64일, 연간 2-3항해
평균 연령		24-48세	연령폭은 23-45세로 평균 30세	60세 이상	30-35세
성비		10%미만 여성	전원남성	남성 100%	2% 여성
예산	정부와 업계 반씩 부담, 여비는 상하이 수산대학 부담	읍서버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다름.(정부: 약60%, 업계: 약40%)	정부행정원 농업위원회 3억 6000만원		1억 3,650만원, 1척 당 420만원 FFA 내셔널 프로그램 및 호주 ODA 부담
인원	12~13	10	24-39		총계 191

제3절 국제기구의 흡서버 프로그램 현황

- 전세계 수산자원은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현재 유엔에서는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어 있지 않는 해역에서의 조업은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결의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수년이내에 현실화될 전망이다. 수산업에 흡서버 제도의 도입은 전세계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산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부수어획 방지 등의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림 2-2〉 국제수산기구해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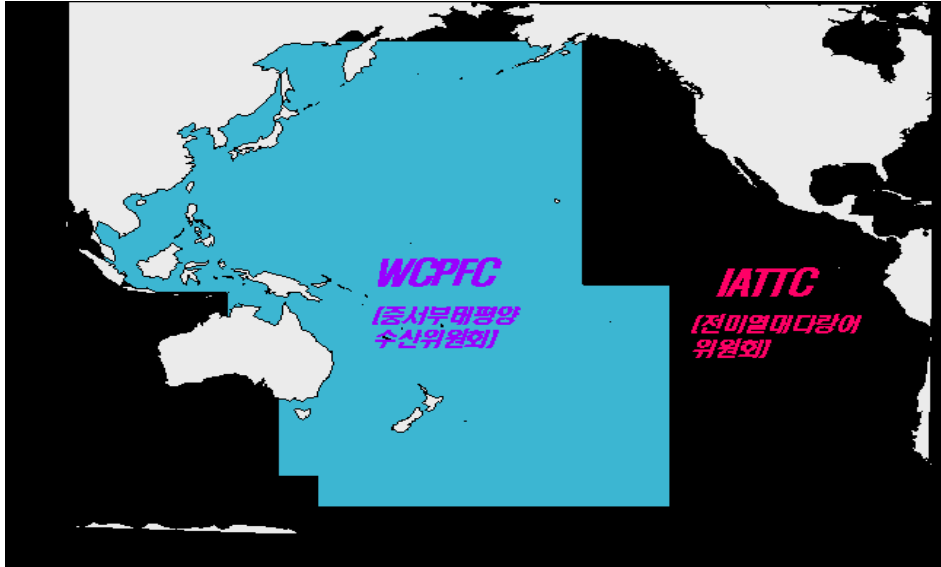


1.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 우리나라 2007년 원양어업 생산량 중 다랑어(참치) 생산량은 약30만 톤으로 전체 원양어업생산량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약 97%인 29만 톤(약 6,000 억원)이 중서부태평양에서 어획되고 있다. 중서부태평양은 우리나라 원양다랑어 어선 178척중 150척(84%)이 조업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원양어장이다.
- 중서부태평양의 다랑어 자원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estern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WCPFC)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지역읍서버 프로그램의 추진 근거는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7장 제28조 ‘지역읍서버프로그램’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림 2-3〉 중서부태평양 협약수역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읍서버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추진은 2006년 12월 사모아 아피아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제3차회의(WCPFC 3)시 지역 읍서버 프로그램 (ROP) 개발을 위한 지역읍서버 회기 간 실무그룹(IWG-ROP) 회의 개최에 관한 제2차 기술이행위원회(TCC2)의 권고안 승인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 동 권고안에 따라 2007년 9월 제3차 기술이행위원회(TCC3) 회의 전에 제1차 회기 간 지역읍서버프로그램 작업반회의(IWG-ROP)가 개최되었으며, 2007년 12월 괌에서 개최된 제44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4) 에서 지역읍서버프로그램을 위한 신규 보존관리조치(CMM- 2007-01)을 채택(2008년 2월 15일 발효)하였다.
- 동 보존조치의 실질적인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2008년 7월 7-10일 피지, 나디에서 제2차 IWG-ROP가 개최되었고, 2008년 10월 2일 미크로네시아 폰페이에서 개최된 TCC4에 제2차 IWG-ROP 개최 결과를 보고하였다.

1) 제1차 회기간 지역옵서버프로그램 작업반회의(IWG-ROP)

- 동 회의에서는 사무국이 준비한 지역옵서버프로그램 초안을 검토하였으나 FFA를 중심으로 하는 연안국과 우리나라,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조업국간에 이행단계, 비용부담, 자각어선에 자국옵서버 승선 문제 등에 대한 극심한 대립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향후 회기간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2) 제4차 연례 회의

- 제1차 옵서버작업반회의에 이어 속개된 제3차 기술이행위원회에서도 아시아 조업국들은 2014년까지 옵서버 승선율 5% 달성을 지속적으로 고수하였으나, 연안국들과의 비공식 협상을 통하여 2012년 6월까지 5% 달성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 자국 옵서버의 승선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는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이 이미 지역옵서버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자국적 선박에 자국 옵서버가 승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일본 및 대만은 소형어선에 대한 옵서버 승선 면제를 주장하고 옵서버 승선 기준을 선박 길이 30m이상으로 제시한 반면, 미국은 자국에서 10m 어선도 옵서버가 승선한다고 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 2007년 12월 괌에서 개최된 제4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연례회의에서는 지역옵서버프로그램에 관한 보존관리 조치(CMM 2007-01)가 채택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범위: 자국수역내서 조업하는 자국어선을 제외하고는 협약 수역 내 조업하는 전 어업에 대하여 적용
- 이행단계
 - 2008년부터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및 소지역 옵서버 프로그램을 WCPFC 지역 옵서버 프로그램의 일부로 인정
 - 2012년 6월까지 옵서버 승선율 5% 달성(항차 기준)
 - 북위 20도 이북의 신선어류만을 적재한 어선은 북방위원회에서 지역옵서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위원회에 권고함
 - 소형어선의 정의, 소형어선 및 가다랑어, 날개다랑어를 어획하는 예연승(Troll) 및 낚시어선에 대하여는 옵서버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을 연기
- 옵서버 프로그램 작업반 계속 운영
 - 세부프로그램 규정 등 개발, 옵서버 훈련 및 안정, 비용분담, 자국어선에 자국 옵서버 승선여부 논의 등

3) 제2차 회기간 지역읍서버프로그램 작업반회의(IWG-ROP)

- 지역읍서버프로그램에 관한 보존관리 조치(CMM 2007-01)의 세부절차 수립을 위한 제2차 지역읍서버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작업반 회의가 2008년 7.7-10일간 피지난디에서 개최되었는데, 주요 논의사항은 ① 선상에서 읍서버가 수집할 최소 자료의 범위, ② 자국 어선에 자국 읍서버 승선문제, ③ 읍서버 프로그램 인증 잠정 최소기준 합의, ④ 읍서버 프로그램 인증절차 합의, ⑤ 읍서버 프로그램 인증절차 합의, ⑥ 읍서버 승선을 위한 선박 크기 결정, ⑦ 읍서버 경비문제, ⑧ 자료관리, ⑨ 읍서버 기간요원 고용에 관한 사항 등 이었다.
- 자국 어선에 자국 읍서버 승선문제는 제1차 지역읍서버 작업반회의에서 연안국들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아시아 조업국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동 사안은 중서부태평양 협약 제28조 3항 ‘지역읍서버프로그램은 위원회 사무국이 승인한 독립적이고 공평한 읍서버들로 구성한다’는 내용 중 “독립적이고 공평한 (independent and impartial)”의 정의가 자국 읍서버 이외의 외국인 읍서버를 의미하는가가 문제가 되었다. 조업국은 기국이 읍서버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현행 자국 읍서버 승선 요건에도 읍서버가 이전에 종사한 회사에서 퇴직 후 일정기간 지난 후에는 동 회사 선박에 승선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어 자국읍서버 승선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 한편, 2007년 12월 제4차 연례회의시 채택된 지역읍서버프로그램 관련 보존관리 조치(CMM 2007-01)는 “국가 읍서버프로그램(NOP)” 및 “소지역 읍서버 프로그램”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지역읍서버프로그램의 일부로 인정하고 사무국이 읍서버 공급자를 인증토록 하고 있다. 동 조항에 의거하여 사무국은 각국의 국가 읍서버 프로그램을 인증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잠정 최소 기준을 설정하였다.
 - 읍서버 매뉴얼: 각국 읍서버프로그램의 읍서버 매뉴얼을 사용키로 하고 이의 사본을 사무국에 제출키로 하였다.
 - 읍서버가 수집할 자료 : 각국 프로그램에서 정하는 자료를 수집키로 하였다.
 - 읍서버 훈련 : 위원회가 정하는 훈련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 읍서버 행동규범 : 각국이 행동규범을 정해야 한다.

- 안전 : 옵서버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관련 자료를 사무국이 받아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 논의시 보험 등의 항목에 대하여는 각국의 실태 및 의견이 달라 추후 논의기로 하였다.
 - 옵서버 배치 조정 : WCPFC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 조정관이 지정되어야 하며, 옵서버 배치에 관한 행정절차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옵서버의 보고서 검토 : 각국 프로그램은 옵서버 보고서 검토제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장비 및 물품 : 옵서버 안전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이 공급되어야 한다.
 - 통신 : 옵서버는 선상 통신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옵서버 수행사항 평가 : 각국의 위원회에 대한 연례보고시 각국 프로그램 수행사항 및 각 옵서버 수행사항에 대하여 보고기로 하였다.
 - 분쟁해결 : 각국 프로그램은 분쟁해결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 옵서버 프로그램 인증절차와 관련하여 협약 제28조 제3항의 ‘사무국의 국가옵서버 승인(authorization of national observer programs by the Secretariat)’ 규정과 옵서버 보존조치(CMM2007-01) 제14항 사무국의 역할 중 “옵서버 공급자 인증(Authorization of observer providers)” 규정의 해석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우리나라, 미국 등은 사무국이 개별 옵서버를 인증할 경우 행정경비 등의 가중으로 비효율적일 것이기 때문에 옵서버 보존조치에서 사무국장이 옵서버 공급자(국가 프로그램 등)를 인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뉴질랜드 등의 의견제시로 동 회의는 보존조치상의 옵서버 공급자 인증규정이 협약 28조 3항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 옵서버 승선을 위한 선박 크기에 대해서는 일본, 대만 등은 소형어선(길이 24m이하)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조업국들은 선상 안정 및 옵서버 승선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소형어선을 옵서버 승선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였고 유사한 조건 하에 있는 대만, 필리핀은 일본입장을 지지한 반면, 미국 및 FFA 회원국은 자국의 소형어선도 옵서버가 승선하고 있음을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여 사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 읍서버 경비 부담 주체 설정과는 별도로 읍서버 경비 산정이 여행경비, 최소기준 충족을 위한 경비 추가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이행위원회와 연례회의에서 논의기로 하고, 필요시에는 별도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4) 제4차 기술이행위원회

- 2008. 10. 2 - 10. 7일간 마이크로네시아, 폰페이에서 개최된 제4차 기술이행위원회에서는 읍서버 자료수집 내용(이행감시목적 포함)에 합의하였으나 자국어선에 자국어적 읍서버 승선, 비용부담 주체, 읍서버 승선 면제대상 어선 크기 등은 향후 재협의기로 하였다.

5) 제5차 연례회의

- 2008년 12월 부산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제5차 연례 회의 결과 각국 읍서버 프로그램을 WCPFC 읍서버 프로그램으로 인정하기 위한 “인증기준”을 채택하였고, 2009년부터 지역읍서버 프로그램을 잠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읍서버의 자료수집 범위(과학자료 및 어업감시자료)에 합의하였다. 향후 읍서버 비용, 읍서버의 안전 문제, 읍서버의 공급원(한국 제기), 읍서버 감시제도(중국 제기)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 선박감시제도(Vessel Monitoring System) 관리와 관련하여 합의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① 적용범위 : 협약수역 내 공해수역, ② 선박 위치 매 4시간 마다 사무국에 자동보고의무 규정, ③ 자동위치발신기 검사규정, ④ 동 규정은 2009년 4월 1일자로 시행합의 등이다. 한편, ① 자동위치 발신기 고장시 복구 소요 기간(조업국 : 최대 45일, 연안국 30일 주장), ② 자동위치 발신기 고장시 수동보고 주기(조업국 : 8시간, 연안국 4시간)등에 대하여는 조업국 및 연안국간 이견으로 미결인 채로 관리규정을 채택하고 향후 논의할 예정이다.
- 해상전재 제도와 관련해서는 조업국 및 연안국간 이견으로 차기 회의에서 논의

기로 하였다. 조업국은 공해상 전채 허용을 주장하고, 연안국은 공해상 전채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2. ICCAT(대서양 참치 보존 위원회)

- ICCAT는 1969년 FAO 주도로 발족된 기구로 현재 40여개 회원국을 확보하고 있는데 고도회유성 어종에 관한 가장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기구이다.
- 우리나라는 1970년 8월에 가입한 후 대서양에서 지속적으로 다랑어 조업을 하였으나, 최근 들어 어업규제가 심화되면서 대서양 조업의 경제성이 악화되자 많은 어선들이 이 수역에 대한 조업을 소극적으로 행하고 있다. <부록 3 참조>

3. IATTC(전미 열대참치위원회)

- IATTC는 우리나라가 주로 조업하는 태평양 수역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수산기구인 바 매우 중요한 수역으로 중서부태평양 수역의 조업과 겸업할 수 있는 수역이다. IATTC는 미국, EU, 에콰도르 등 전통적으로 선망어업이 강한 국가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최근 이들 국가들에 의한 자원보존조치가 매우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 지역기구의 오피서버를 승선시키고 있는데 모든 어선에 승선시키고 있다(130명). 지역의 특성상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인 오피서버를 승선시키고 있는데 오피서버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다른 지역이나 국제 수산기구 등과 비교하여 적게 드는(30~40\$/일) 이점을 가지고 있다. <부록 3 참조>

4. IOTC(인도양참치위원회)

- IOTC는 ICCAT처럼 다양한 자원보존조치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 이행측면에서 많은 개선과 노력이 필요한 수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주변 연안국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협약이행을 강화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이 수역의 자원고갈 또한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 따라 어업감시 읍서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과학 읍서버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 IOTC는 어느 수역보다 자원보존조치를 다양하게 채택하고 있는 수역으로 EU, 일본, 미국 등은 인도양수역에 집중되고 있는 대만 어선의 IUU어업을 규제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운반선에 대해 읍서버를 승선시키자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EU측의 주장에 대해 한국 및 일본 등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인 읍서버를 승선시키는 것으로 합의를 보려고 회원국들이 노력 중이다.

5.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 위원회)

- CCSBT는 남방참다랑어 단일 어종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수산기구로 어업관리가 비교적 엄격한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TAC를 조정하기 위하여 자원관리절차(Management Procedure, MP)를 도입하였고 읍서버 승선율이 20%로 높은 편이다. 읍서버는 자국인 승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회원국간에 분쟁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부록 3 참조>

6.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 CCAMLR의 주요 목표어종은 이빨고기와 크릴새우로 우리나라에서는 연승어선과 트롤어선이 진출해 있는데, 이빨고기의 IUU어업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이빨고기의 IUU어업규제대상에는 CCAMLR 회원국뿐만 아니라 이빨고기를 잡는 비회원국도 포함되어 CCAMLR 관할수역 외 공해에서 이빨고기를 잡

는 경우에도 협조해야 한다.

- CCAMLR의 자원보존조치를 위한 조업규제조치는 매우 광범위한데 특히 VMS, 옵서버제도, 어선등록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옵서버제도는 주로 과학옵서버의 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들의 부수어획에 대한 감시가 생물다양성 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고, 옵서버의 타국승선이라든지 의사소통문제,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세부적인 국가간 갈등소지를 최소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CCAMLR에서는 협약수역 내 연안국들의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IUU어선으로 간주하는 어선명단작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을 정도로 해당 수역내에서의 IUU조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 CCAMLR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라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어업이 중심이 된 다른 국제수산기구에 비해 생물다양성 보존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

7. NAFO(북서대서양어업위원회)

- 캐나다의 200해리 외부 조지 बैं크의 남서부를 관리수역으로 NAFO 회원국간의 국제협정에 따라 어업이 관리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북서대서양어업관리위원회(ICNAF)가 관리하고 있다. MRAG가 EU의 옵서버 제도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데 MRAG는 NAFO 관리수역에서의 모든 유럽연합어선에 대해서 옵서버를 승선시키도록하고 있다. 30여개의 EU어선이 조업허가를 받았는데 옵서버를 승선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 EU어선의 옵서버의 주된기능은 NAFO의 보전 및 관리규제조치에 따라서 어선의 조업활동의 감시 및 감독, 어업활동 구역, 사용어구, 어획어종에 대한 비율, 어종별 체장 및 성별, 어획물 폐기와 혼획율 및 미성장 어종어획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을 하고 있다. MRAG는 모든 옵서버들에게 과학장비와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옵서버들로부터 모든 자료를 방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며, 기록된 정보를 EU DGXIV(Fisheries), NAFO 어업관리 집행국, 각 어선국가의 어업관리국에 제출해야 한다.

〈표 2-3〉 국제수산기구의 읍서버 프로그램 비교

	기관의 읍서버 프로그램 여부	커버율	목적	예산 부담 주체
ICCAT	자국 읍서버 승선	5%	어업 감시 과학읍서버	
IATTC	기구 읍서버 파견	100%	어업감시	IATTC(회원국분담금, 정부·업계)
IOTC	자국 읍서버 승선	5%	어업감시(IUU) 운반선 읍서버	운반선 : 업계
CCSBT	자국 읍서버 승선	20%		운반선 : 업계담당
WCPFC	기구 읍서버 승선계획	5%		
CCAMLR	기구 읍서버 파견(반드시 외국인 승선)	100%	어업감시 과학읍서버	CCAMLR(회원국분담금, 정부·업계)
NAFO	각국 파견	5~10% 목표		정부·업계
FFA	기구 읍서버 파견	20%	어업감시	FFA(회원국분담금), 호주 ODA

제4절 옵서버프로그램 운영방법의 비교

1. 예산

- 각종 옵서버 프로그램에서 옵서버 1명당 1개월간 필요한 제반 예산(추정)은
 - 북미, 유럽·일본의 원양어업 및 근해어업(장기항해의 경우)은 1,500만~2,300만원인데, 미국·캐나다·프랑스의 연안, 근해어업(단기항해의 경우)은 800~1,000만원 내외이다.
 - IATTC의 경우에는 옵서버의 대부분이 개도국 출신이므로 평균 경비는 600만 원으로 이는 모든 옵서버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경비에는 수산 컨설팅 회사, 옵서버 회사, 대리점 등에 대한 지불, 옵서버의 급료, 보험료, 여비, 기자재 비용 등 모든 제반 경비가 포함된다.

〈표 2-4〉 국제 옵서버 프로그램의 연간 예산 비교

옵서버 프로그램의 종류(해역)		연간 옵서버 수(명)	연간 평균 승선월수(개월)	연간 총 파견인월(인월)	연간 예산(억원)	비용 부담 주체
근해·원양어업(1항해는 1개월에서 4개월)						
미국	하와이 다랑어 연승	30	4	120	28	정부
	저어 트롤 (알래스카만, 북태평양)	300	3	900	154	업계(79%) 정부(21%)
스페인 프랑스	취노래미(대서양)	22	1.3	29	5.7	ICCAT
	ESTHER(선망, 대서양·인도양)	3	3.9	12	2.1	정부
	선망 혼획 (대서양·인도양)	12	2	24	4.1	ICCAT
	선망 모라토리엄 (대서양)	18	1.3	54	8	선망업계
스페인	황새치 연승	2	3.5	7	1.1	정부
일본	다랑어·가다랑어 어업	21	2	42	8	정부
		21	2.5	53	8	정부
연안·근해어업(1항해는 2주 미만)						
미국	다랑어 연승(대서양)	9	4	36	3.9	정부
	황새치 유망(캘리포니아)	20	5	100	8.8	정부
IATTC	다랑어·가다랑어 선망	130	5	650	39	업계(67%) IATTC(33%)

2. 읍서버 프로그램 방식·시스템 비교

1) 디브리핑

- 디브리핑은 읍서버의 자질과 데이터의 질을 음미·평가할 수 있으므로 읍서버 프로그램에서 매우 중요한 루틴워크가 되어있다.
- 하선 후 디브리핑을 할 시에 디브리퍼가 읍서버에 대해 많은 질문과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대조 등을 실시하지만 질의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허위 보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재훈련을 요구받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향후 고용하지 않는(해고) 경우도 있다. 특히 영국 및 캐나다(읍서버 회사), 뉴질랜드(수산청)는 엄격하다.

2) 어드바이저 제도(정신적 케어 및 업무 체크)

- 미국 북태평양 저어어업 읍서버 프로그램(시애틀 NMFS·AFSC)에서는 읍서버에 대한 어드바이저 담당자가 있다. 어드바이저는 현장의 읍서버 활동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를 관리하고 때로는 정신적인 조언도 하고 데이터 수집에 관한 감시(불시 검사)도 실시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읍서버를 적절하게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어드바이저는 읍서버가 처음 승선했을 시 FAX와 E메일로 읍서버에게 자기소개·업무의 목적 등을 설명하고 특히 신참 읍서버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어드바이저의 중요한 임무는 현장 읍서버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언하는 것이다.

3) 해상안전

- 해상안전교육은 현재로서는 세계의 모든 읍서버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훈련이자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수년 전 스페인, 미국, 프랑스에서 읍서버가 승선했던 어선이 침몰하거나 화재를 입은 사건이 3건 연속 발생했지만 읍서버는 모두 생존하였

다. 현장에서는 선원이 자신의 안전 확보에 급급해 옵서버는 방치되기 마련으로 스스로 안전처치를 강구하지 않는 한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워싱턴 DC의 NMFS 본부는 표준화된 해상안전훈련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

4) 옵서버의 정신면에 관한 교육

- 일반적으로 옵서버 프로그램에서는 일련의 훈련을 거쳐 테스트 선발된 옵서버라도 승선 후에 정신적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불화 내지 태만 등으로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심리적인 훈련·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5) 커버율의 연구

- 옵서버 프로그램의 커버율에 관하여, IATTC에서는 부트스트랩법에서 샘플링법을 파악하여 항상 검토하고 있다. 100%의 커버율이 이상적이지만 예산상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좋은 옵서버 정보를 얻기 위해 비용대비 성과를 생각했을 경우, 경험이 풍부한 옵서버를 승선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같은 예산 내에서 경험이 많은 옵서버가 더 큰 커버율을 달성하게 되면 만족할 만한 옵서버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노르웨이에서도 동일하게 과학옵서버프로그램, 감시 옵서버 프로그램과 더불어 비용·효율법(Cost effective methods)에 의한 옵서버의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 신입 옵서버의 임금은 낮지만 경험이 없어 데이터의 정확도가 낮고 한편, 베테랑의 임금은 높지만 데이터 정확도가 높다는 평가가 있다.

6) CCAMLR :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한 옵서버 프로그램 정보처리시스템

- CMLAR 홈페이지에는, 13개국어 사용하는 공통의 데이터 폼이 있고 완비되어 있다. 옵서버 리포트의 공통양식이 있어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어느 국가의 어느

읍서버가 사용하더라도 통일된 리포트가 되기 때문에 국제기관에게 있어서는 매우 이상적인 형식이 되었다. NAFO는 이 부분에 있어 좀 뒤쳐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호주·덴마크·노르웨이·벨기에 : 읍서버의 영구고용

- 읍서버는 통상 임시고용이지만 이런 국가들의 읍서버 프로그램에서는 기관으로 고용되어, permanent한 읍서버 업무를 하고 있다. 읍서버 업무가 없을 때에는 기관으로서의 업무(연구보좌)를 하는 등 이상적인 읍서버 고용시스템이 되고 있다. 읍서버의 경우, 연구소의 기관 신분이므로 퇴직의 염려가 없어 상시 모집할 필요가 없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제3장 국제옵서버제도의 문제인식

제1절 관련법체계

1. 원양산업발전법 체계

- 국제옵서버제도에 관해서는 원양산업발전법¹⁾ 제21조 3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외수산자원조사, 원양어업 관련 연구와 과학기술의 진흥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국제옵서버 프로그램 운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단순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 외에 아무런 세부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더 나아가 국제옵서버 프로그램 운영이 장관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관은 국제옵서버 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원양산업발전법 ‘제2절 국제협력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이 장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비해 국제옵서버제도 운영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미 법률 초안 작업 당시부터 국제옵서버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식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동 법의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는 아무런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채 모든 업무를 ‘국립수산원장’에게 포괄위임하고 있다. 즉 법체계상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 시행계획이나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문제는 과거 2002년 국제옵서버프로그램 운영 방안이 수립된 그 시점부터 계속되어 온 것으로 법적 근거의 부족으로 안정적인 국제옵서버양성에 어려움이 많았다. 2007년 8월 3일 원양산업발전법이 제정된 후에도 포괄위임입법²⁾ 하에 구

1) 2007년 제정

체적인 입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립수산물과학원의 내부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의 국내도입 및 양성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원양산업발전법에 제시된 국제옵서버에 대한 실시 의무가 시행령에서 다시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포괄위임되는 것은 위법소지가 높다 할 것이다.

2. 국립수산물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 지침

1) 국제옵서버의 지위

- 국립수산물과학원은 자체 운영지침을 통하여 국제옵서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운영지침의 성격은 국립수산물과학원의 훈령 수준이며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원양어업 분야에 관한 주요 업무 사항으로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양어업에 관한 국제옵서버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혁을 살펴보면 2002년 5월 해양수산부가 자체 프로젝트를 지정하여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 국립수산물과학원이 국제옵서버 양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이관받은 것은 2004년이며, 국제옵서버 운영 지침이 제정된 것은 2007년 3월 15일이다. 즉 2007년 전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아무런 자체 지침조차 없는 상태에서 국제옵서버 양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운영체제 속에서 선발된 국제옵서버는 법적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온전하게 보유할 수 있는 자인가? 또는 국내법상 법적 근거가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분명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 더 나아가 2007년 8월에 제정된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 3에서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아무런 세부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아무런 법

2) 포괄위임입법이라함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입법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입법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적 근거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국제옵서버 운영 지침’ 제1장(총칙)의 제2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옵서버’의 정의를 살펴보면 국제옵서버의 지위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채용하여 양성한 자’로 되어 있다.

- 반면 참고로 최근 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의 제2조(정의) 6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옵서버’란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두 규정을 비교해 볼 때 아무런 법적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없으며, 그 법적 정의 또한 상당부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원양산업발전법에서는 ‘국가가 지정한 자’를 국제옵서버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 법에서는 국제옵서버를 자격증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국립수산과학원의 원장이 채용하여 양성한 자를 국제옵서버로 임명하도록 한 ‘국제옵서버 운영 지침’의 채용계약관계와는 전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그 신분에 대하여 동 지침 제4조(신분)에서 “제3장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옵서버는 비정규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는 과학원장이 채용한 국립수산과학원의 직원과 똑같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더 나아가 이들의 업무 성격상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뽑도록 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이 비정규직은 동 조에 제시된 계약관계, 즉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과의 근로계약을 통해 채용된 신분으로 만약 원장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국제옵서버 지위를 상실되도록 되어 있다. 국제옵서버의 운영 자체를 국립수산과학원의 직원 선발과 동일한 선상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그 직의 안정적 수행, 전문성 축적, 해상근무에 대한 경제적 보장 등의 여러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운영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국제옵서버는 국가자격 취득을 통한 인력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옵서버를 양성하여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국제옵서버의 신분에 대해서는 새로 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국제옵서버의 선발절차

- 아무런 법적 보완장치 없이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체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은 태생 자체의 문제로 인해 구체적인 선발절차와 자격부여 절차 모두 해당 프로그램에 선발된 자들에게 아무런 법적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국제옵서버는 선발자격에 있어 ‘2년제 대학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21세 이상 50세 미만의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³⁾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옵서버 운영 지침’에서는 이미 국제옵서버의 자격 자체가 국가공인자격과는 다른 시스템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학력제한을 두고 있다.
- 그리고 나이 제한에 있어서도 민법상 성인기준인 ‘만 19세’ 기준과 전혀 다른 ‘21세’라는 높은 연령을 설정함으로써 구체적인 법적 근거없이 국민의 국제옵서버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50세 미만이라는 기준 또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사유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해 충분한 근거없이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연령제한기준에 대한 새로운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국제옵서버의 채용에 대해서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 내부 인력채용 규정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옵서버의 국가지정자격 부여와는 다른 인력 채용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공인자격 부여의 경우 시험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제옵서버의 경우 과학기술자격으로 분류될 경우 필요한 필기, 실기(실습) 시험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3)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국제옵서버의 자격 종료

- ‘원양산업발전법’에서의 국제옵서버는 국가지정자격을 염두해 두고 있기 때문에 자격의 부여 이후 그 자격 유지를 위하여 최소한 충족되어야 할 요건 또는 금지되는 행위를 적시함으로써 해당 기준을 위반한 경우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옵서버 운영 지침’에서는 기본 전제에서 국제옵서버의 임명을 원장과의 근로계약 체결에 의한 인력채용절차에 준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제옵서버가 근로계약 체결에 의해 채용되었다가 해고되는 형태의 업무수행형태를 취하게 될 경우 해상에서 한 달 이상 근무해야 할 과학전문인력을 확보하기에는 불안정적인 고용형태라 할 수 있다.
-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의 비정규직 직원으로 고용된 경우 국제옵서버가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비정규직 보호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국제옵서버의 임면에 대해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의도하고 있는 ‘국가지정’ 자격으로 본다면 위의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지만, 만약 현재의 국립수산과학원 비정규직 노동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해당 근로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 따라서 국제옵서버 체제 운영은 비정규인력 고용관계를 탈피하여 국가공인자격 부여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해양수산인력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제2절 운영 및 예산

1. 국제읍서버 프로그램의 운영

- 현재의 국제읍서버 제도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인력채용 시스템 속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원의 인력운영계획이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국립수산과학원의 인력충원 예산 내 국제읍서버 고용계획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2년마다 약간 명씩 채용해 왔다.

〈표 3-1〉 국제읍서버 채용 실태

시기	채용 방법	지원자 학력	시험기관	선발인원
2002년 6월	인터뷰	학사이상 (23~55세)	NFRDI	5명 (27세~37세)
2004년 3월	인터뷰	학사이상 (23~55세)	NFRDI	5명 (4명 남자, 1명 여자)
2006년 2월	인터뷰	학사이상 (23~55세)	NFRDI	4명
2007년 2월	인터뷰	학사이상(23~55세)	NFRDI	5명

- 선발된 국제읍서버에 대한 훈련을 위하여 2002년 선발자 5명은 3주간 하와이의 NOAA 소속 태평양연안지역사무소(Pacific Islands Regional Office, PIRO)에 위탁되어 다랑어 연승어선에 승선교육을 받은 바 있다. 2004년부터 국립수산과학원은 전속적인 국제읍서버 관리 및 운영 권한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자체적인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은 2004년부터 자체 읍서버 교육세미나를 개발하고 다랑어 연승어선, 저층트롤어선 등 원양어선에 위탁 승선시켜 실습을 시켜 왔다. 2004년에는 국제읍서버 중 1명은 PIRO, NOAA 등에서 읍서버 데이터분석 및 데이터보고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 2005년에는 2명의 국제읍서버가 IATTC 읍서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료표준에 관한 교육을 받은 바 있다. 2006에는 다랑어연승어선 4척, 다랑어선망어선 2

척, 남빙양 이빨고기류 저연승어선 4척 및 베링해 명태 트롤어선 1척에 각각 1명씩 승선하여 총 24개월간 읍서버 과학조사 활동을 벌인 바 있다.

〈표 3-2〉 국제읍서버 교육 교관

과목	교관인원	출신기관	자격
다랑어 어업(연승, 선망)	4명	NFRDI	수산과학자
저층어업(트롤)	2명	NFRDI	수산과학자
소형표층어업(jigging, stick held dagnet)	2명	NFRDI	수산과학자
해상안전	2명	해양수산기술 연수원	해양수산연수원 교관(기술자)

- 국제읍서버의 교육은 ‘국제읍서버 운영 지침’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외자원팀장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팀장의 판단에 따라 신규읍서버에 대한 교육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교육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국제읍서버 수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동 지침 제15조 제3항에서 국제읍서버 교육수수료 이후 받은 수수료증을 공인 국제읍서버 자격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런 공신력을 가질 수 없는 수수료증을 국제공인 자격증으로 통용되도록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국제읍서버 운영 지침’은 단순히 국립수산과학원 내 인력관리를 위한 내규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2007년에 마련된 원양산업발전법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위임은 위법성이 있다는 점과 이 규정을 근거로 한다 할지라도 동 지침은 이미 과거부터 실시되어 오던 것으로 원양산업발전법과의 연계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2. 예산지원 실태

- 국립수산과학원이 2004년부터 국제읍서버 프로그램 운영을 맡으면서 운영경비 지출이 매년 1억씩 지원되었다. 이들의 급료기준은 육상에서 자료조사를 준비하는 시기부터 시작되는데 이 시기에는 하루일당이 28\$이며, 해상에서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에는 하루일당이 56\$로 책정되어 있다. 이들이 평균 현재 1회 평균 2~3개월 승선하여 월평균 350~450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 국제오피서버 운영경비

(단위 : 천원)

연도	교육생수	전체 예산	매뉴얼작성, 교육비	급료	조사여행경비	기타
2004년	5명	100,000	25,000	40,000	30,000	5,000
2005년	5명	100,000	15,000	50,000	30,000	5,000
2006년	4명	110,000				
2007년	5명	110,000				

- WCPFC 5% 승선의무비율일 경우 선망 2명(실제조업 45척 기준), 연승(실제조업 135척 기준) 6~7명 정도로 상정할 경우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의 오피서버 양성 역량으로는 모든 국제오피서버를 WCPFC에만 투입해야 할 정도로 국립수산과학원의 인력양성 역량은 약한 상태이다. 대서양참치기구(ICCAT)의 경우 조업하고 있는 어선에 모두 승선하였기 때문에 100% 커버리지를 나타내나 그 외 다른 지역수산기구에서는 5%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지역수산기구가 국제오피서버 승선을 의무화할 경우 인력양성을 위해 가시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3-4〉 2005년 국제오피서버의 국제수산기구 파견현황

수역	교육생수	승선어선종류	오피서버수	조사월수	커버리지(%)
지중해	ICCAT	다랑어선망	2	3.0	100
태평양	IATTC	다랑어연승	1	2	2
태평양	공해	오징어트롤	2	1	-
대서양	NAFO	오징어지깅실험	1	2	-
태평양	IATTC	다랑어연승	1	2	2
태평양	WCPFC	다랑어연승	1	3	0.3
인도양	CCSBT, IOTC	다랑어연승	1	1.5	4
태평양	WCPFC	다랑어선망	1	1.5	0.7

- 예산지원 측면에서 업계와 정부간 가장 중요한 입장차를 보이는 것은 파견하는 옵서버의 비용을 어느 측에서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국제옵서버의 모집, 교육, 급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CCSBT나 CCMLR과 같은 기구에서 업계가 부담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국제옵서버 양성에 관한 예산은 국립수산과학원에 지원된 사업예산의 일종으로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의 의무도입화를 위한 국가옵서버 양성 준비단계의 지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 옵서버가 실제 활동하는 지역수산기구의 평균 옵서버 고용 비용에 비해 비쌀 경우, 그리고 해당지역수산기구가 자국 외 외국인 국제옵서버 고용에 대해 허용할 경우 그러한 비용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지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국제옵서버의 모집, 교육, 급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CCSBT나 CCMLR과 같은 일부 기구에서 대해서만 업계가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WCPFC에서 주장하는 2012년 5% 국제옵서버 승선비율을 받아들일 경우 현재 다랑어 연승 및 선망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 국제옵서버 외 30~35명(3개월 승선, 예비인력 6~7명 추가)을 더 충원해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1년 국제옵서버 양성 계획보다 많은 숫자로 근본적인 예산지원이 없이는 의무승선비율을 맞추어 수가 없다. 따라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올 것이다. 내국민 옵서버 양성비용보다 저렴한 외국인 옵서버를 전격 고용하는 쪽으로 정책결정하든지 아니면 예산의 급격한 증액이 필요한 것이다.
- 만약 부족한 수의 국제옵서버를 외국인으로 대체할 경우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국가가 국립수산과학원을 통해 국제옵서버를 양성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이 흔들릴 수 있다. 다만 인건비가 싸다는 이유로 외국의 국제옵서버를 고용한다면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보는 업계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user pays principle)’에 맞을 것이다. 업계가 정부에 외국인 옵서버 고용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을 요청할 경우 정부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즉 외국의 국제옵서버를 고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수산과학기술의 발전과 진흥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국제기구의 국제옵서버 의무승선비용을 정부에 전가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 정부가 국립수산물학원에 국제옵서버 양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국제옵서버라는 공공재적 인력의 양성이 국가수산물경쟁력에 기여하는 측면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하여 예산지원의 방향을 잡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반면 업계가 주장하는 업계의 경영수지개선차원에서 업계의 국제옵서버 지출비용을 국가가 대납해줘야 한다는 것은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일종의 보조금적 성격을 띠고 있는 바 원양어업을 지원해야 할 특수한 실익이 있는지 업계가 증명해야 할 것이다.

〈표 3-5〉 WCPFC 주요국들의 국제옵서버 예산조달 방법

	중국	한국	대만	호주	FFA	EU	뉴질랜드
예산	정부와 업계에서 절반씩 부담	옵서버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다름.(정부: 약60%, 업계: 약 40%)	정부 행정원 농업 위원회	호주동부 : 80% 업계, 20% AFMA 부담 호주남서안 : 업계가 전부 부담	호주 ODA로 운용	EU에서 부담	95~99% 업계에서 부담

-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옵서버 예산조달에 관해서 일관된 정책이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는 각 국가들이 업계와 어떠한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예산분담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위의 표가 의미하듯이 국제옵서버 예산조달에 대한 정부지원예산 지급방법에 대해 국제적으로 일관된 정책방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국제적으로는 위법성있는 산업보조금으로 치부될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다.
- 이러한 국가들의 추세를 볼 때 업계와 정부는 국제옵서버를 사용하는 점에 있어 공공정책에 대한 기여측면을 강화시켜 예산지원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는 있다. 다만 외국인 국제옵서버의 고용 시 이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정책목표와 시행상 합리적이라 보기 힘들 것이다. 국내 실업률 개선 효과와 국제수산물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측면에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수 있도록 업계가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3절 업무내용 및 처우

- 국제옵서버제도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원양산업발전법 어느 곳에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의 ‘국제옵서버 운영 지침’을 통해서 그들의 업무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들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한국 및 외국 원양어선 또는 시험선에 승선하여 어획통계조사, 생물학적 조사, 조업실태 조사 등
 - 어선별 할당량 소진상황 조사(쿼터 조업선에 한함)
 - 자원량 평가를 위한 과학적 자료 및 시료 수집
 - 관할수역의 국제수산기구에서 마련한 어업별 자원 보존조치 준수여부 조사
 -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 여기에는 국제옵서버가 주로 하는 업무라 할 수 있는 과학옵서버의 기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업별 자원보존조치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은 승선옵서버가 주로 하는 감시기능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지침 제11조에서는 국제옵서버의 근무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시하고 있다.
 - 조업방해 금지 및 불필요한 분쟁야기 금지
 - 임무 수행시 규제사항 및 보존조치 위반 선원에 대한 시정권고, 조업금지 등 행정권한 행사 금지, 객관적 사실 업무일지 기록
 - 조업시 발생하는 이익 향유 또는 요구 금지
- 근무시 준수하여야 할 행동수칙이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료에 대한 기밀보장 의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옵서버 활동과정에서 파악한 어장에 대한 기밀사항에 대해 보장해야 할 의무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보수에 관해서는 동 지침 제19조에 따라 보수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국제옵서버가 지급받는 보수와 여비는 대개 1회 출항에 월별 350~450만원 정도 받는다. 다른 국가들의 대부분 일당은 10만원~20만원 사이로 우리나라 국제옵서버들이 승선시 책정된 56달러는 높은 보수는 아니다. 다만 WCPFC의 의무승선비율 도입시 도서 연안국의 매우 짠 국제옵서버의 고용문제는 보수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입장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고용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4절 한계 및 시사점

- 우리나라 국제옵서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국립수산과학원이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체 예산에 따라 할당된 예산 총 1억원을 바탕으로는 국제옵서버를 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WCPFC 등의 국제수산기구가 채택할 의무승선비율을 충족시키기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 국립수산과학원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국제옵서버를 고용하여 이들에게 비정규직으로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불안정한 고용계약 및 권리의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예산문제나 고용의 안정 등을 위해서 2007년 8월에 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의 제21조에 근거한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의 양성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립수산과학원의 국제옵서버 운영 지침 제15조에 제시된 내용인 즉 ‘수료증을 국제옵서버의 공인 국제옵서버 자격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우리나라 국내법상 아무런 법적 근거나 국가공인자격증도 아닌 수료증을 공인 국제 옵서버 자격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비약적 발상이다.
-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옵서버 선발 후 자격 시험 통과시 수료증을 자격증으로 바꾸고, 필요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원장이 부여한 국제옵서버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전속사항으로 규정된 지침을 폐지하고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법적 근거 속에 국제옵서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국립수산과학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또한 이러한 법적 체계의 재정비를 통해 법적 근거가 있는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보다 명확해 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

제옵서버의 예산지원에 대해 모든 경비를 정부부담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업계가 전부 부담해야 할지는 각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정형화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옵서버의 수산과학 발전에 대한 기여 및 장기적 인력활용 가능성 등 공적이익을 보다 체계화하여 정부가 부담을 가질 근거를 마련할 것인지는 업계와 진지한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국제수산기구들이 전격적으로 의무승선비율을 채택할 경우 우리 정부입장에서는 빠른 시일내 필요한 수요예측하에 옵서버를 양성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 업계에서 우리나라 출신 국제옵서버를 태우는 대신 외국 옵서버를 태우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예산지원은 업계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4장 국제옵서버에 대한 병역면제 가능성 검토

제1절 해양관련 병역면제사례

1. 산업기능요원 제도

1) 개요

-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전문연구요원과 함께 병역대체(특례) 제도의 일환으로 병역법상 인정된 제도이다.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 기간 복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대체하게 하는 제도로서 그 목적은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고급인력에 대해 학문과 기술의 연구기회를 부여하고,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체의 기술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해운·수산 분야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는 전국에 140여 개 있고 그 중 부산, 울산지역에는 120여개 업체에 1,800여 명이 배정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부산지방 병무청 관할 해운·수산 분야 병역지정업체가 전국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2) 지정업체의 선정

- 해운업 분야는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 선박관리 업체가 해당하며, 수산업 분야는 어선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원양이나 근해어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해당한다. 이러한 업체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병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병무청장이 선정하게 된다.

3) 소요인원의 배정

- 해운·수산 분야 지정업체의 장은 다음 해의 산업기능요원의 소요인원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매년 8월 10일까지 통보해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취합하여 8월 31일까지 병무청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병무청에서는 ‘병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 후 12월 하순경 관할 지방병무청의 장에게 배정인원을 통보한다.

4)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 징병검사결과 현역병 입영대상 또는 공익근무 소집대상 보충역으로 판정받은 사람 중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편입대상이다. 지정업체의 장은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배정인원의 범위 안에서만 채용할 수 있다.
- 따라서 지정업체의 장은 종사자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지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경우는 늦어도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편입원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배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편입처분을 하고 그 사실을 지정업체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5)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 원양, 근해어선 또는 해운업의 선박승선 관련분야 중 해기사 면허분야의 현역은 24개월 복무하도록 되어 있다.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에 종사해야 하거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분야의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해야 한다.
 -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 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 되었을 때
- 또한 다음 사유로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의무종사기간 2년을 경과한 때,
 - 승선종사자 중 고용계약기간의 만료로 하선한 때 또는 선박수리 등으로 3개월 이내 재승선이 어려울 때,
 - 지정업체의 경영악화로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될 때,
 -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정되었을 경우 등
-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산업기능요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옮겨 종사하여야 하며, 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은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다른 지정업체에서 복무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는 경우 그해 배정인원과는 관계없이 채용할 수 있고 부도로 인한 조업중단 등 지정업체 선정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정업체의 장은 의무자로 하여금 관할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전직에 대한 상담을 하도록 하여 의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편입이 취소되고 편입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다.
 -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
 -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 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때
 - 전직대상자가 대기기간 3월 이내에 다른 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 보증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때

7) 복무의 만료

- 병역법에서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은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종사자, 지정업체로 선정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의 종사자,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후계 농업인 및 어업인(제38조)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은 4주 동안의 교육소집이 있고, 의무 종사기간은 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이 복무 기간이다.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 기간 중에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선정이 취소된 경우,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 안에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하여 종사해야 한다. 3개월을 초과하는 전직 대기기간은 의무종사 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산업기능요원은 1년의 의무종사 기간이 지나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직할 수 있다.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취소된 자는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다.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1년 이상 종사하다가 편입이 취소되어 징집 또는 소집된 자에 대하여는 군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8) 소결

- 산업기능요원제도는 2012년에 최종폐지를 앞두고 있으며, 올해부터 선발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에 들어갔다. 2007년 2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전략’을 통해 2012년까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 따라서 폐지 예정인 산업기능요원제도를 기반으로 국제 옵서버 양성을 위한 병역면제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그 기능 또한 과학 옵서버의 기능을 고려한다면 전문연구요원에 가까운 역량이 필요한 업무영역에 대해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2.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1) 개요

-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 근무하는 사람이다.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사·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 근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된다.⁴⁾
-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그동안 승선인력에 대하여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경우 복무를 마친 것으로 하던 것을 2007년 2월 발표된 병역제도 개선방안에 의하여 2012년부터 전면 폐지되게 되었다. 그 대신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도입하여 해양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비상시 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다.
-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폐지는 출산율감소에 따라 병역자원의 고갈로 말미암아 현역자원의 공급도 부족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선주협회를 필두로 해운 및 수산업체들이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결국 병역법 개정을 통해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도입게 된 것이다.

2) 병역법 개정 내용

- 2007.7.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8549호]을 통해 승선근무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개정 사유는 그동안 승선인력에 대하여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경우 복무를 마친 것으로 하던 것이 금년 2월 발표된 병역제도개선방안에 의하여 2012년부터 전면 폐

4) 병역법 제23조의2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지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도입하여 해양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비상시 이들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또다른 개정사유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고 군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유급지원병제의 도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유급지원병제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승선근무예비역의 정의(법 제2조제1항 제8호의2 신설) :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 나. 유급지원병제의 운영(법 제20조의2 신설) :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본인의 지원에 의해 연장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급지원병제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 다.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법 제21조의2 신설) : 「선박직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등으로서 항해사·기관사의 면허가 있는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한다.
- 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법 제23조의2 신설) : 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항해사·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 한다.
- 마.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전시특례(법 제83조제1항 제2호의2 신설) :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때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의 사람에 대한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에의 편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절 국제옵서버의 병역특례 적용 가능성

1. 타 분야와의 형평성 고려기준

-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 기간 복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대체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 목적은 고급인력에 대해 학문과 기술의 연구기회를 부여하고, 산업체의 기술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병역법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의 편입대상을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제37조)
-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은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종사자, 지정업체로 선정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의 종사자,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후계 농업인 및 어업인으로 되어 있다.(제38조)
- 전문연구요원제도와 달리 산업기능요원제도를 2012년에 최종폐지를 앞두고 올해부터 선발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에 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2007년 2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전략’을 통해 2012년까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7년 2월 5일, 정부는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 2+5전략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국가 병역제도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 그 주요골자는 ①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 ② 병역의 단순 이원화(군복무+사회복무) ③ 현역 복무기간의 단계적 단축 ④ 2012년 이후 전환복무, 대체복무의 폐지 등으로 요약대체복무제도 폐지사유는 병역의 형평성유지와 효율적인 인력 활용에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분야의 산업기능요원 충원제도 또한 이러한 틀 안에

서 단계적인 폐지대상으로 지정된 것이다.

2. 국제옵서버 고용에 대한 특례운용기관 지정 문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기능요원제도는 2012년에 최종폐지를 앞두고 올해부터 선발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에 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2007년 2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전략’을 통해 2012년까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였으므로 산업기능요원제도가 다시 부활하지 않는 한 국 국제옵서버 고용에 관한 특례운용기관으로 지정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 국제옵서버 고용에 대한 병역면제자와의 형평성 문제

- 국립수산과학원은 2002년 이래 남방 참다랑어 보존위원회 등 국제수산기구의 관할수역에서 조업하는 회원국의 조업선에 옵서버 승선을 의무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2002년부터 국제옵서버 프로그램 사업으로 매년 수명씩의 인원을 선발하여 채용하였다. 국제옵서버라는 직종은 승선 시 월 최소 US\$3,000에서 최대 US\$4,000까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인기직종을 알려져 있어서 병역을 필한 자를 채용에 차별하거나, 병역미필자를 우대할 경우 여론을 악화시키거나 소송의 대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즉 국제옵서버제도를 군병역대체 효과와 연계하여 인력을 충원하려는 것은 기존의 병역을 필한 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 한편 병무청 실무관계자와의 면담결과 2008년도부터 시행될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경우 현재 해운계통에서 요구하는 인원에 대한 공급이 모자라 ‘국제옵서버’를 위한 병역대체제도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3절 병역특례 도입 가능성

- ‘국제읍서버’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2007년도 병역법 개정에서 인정된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논리와 관련하여 병역법 개정을 위한 국회 바다 포럼에서 논의 된 주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주로 3가지 사유에 따라 병역법 개정 후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첫째, 전시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국가의 상선대는 육·해·공군 다음으로 국방의 제4군으로서 국가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을 살려 동북아 물류거점국가 및 해양강국으로 발전하려면 강력한 국가선대 제4군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선근무 인력을 국가경제무역전쟁의 제1선에서 복무하는 현역 제4군으로 인정해야 한다. 셋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 및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이들 물적 요소에 관한 법에 필요한 인적 요원의 확보를 보장하는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 따라서 국제읍서버 제도에 대한 병역대체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제읍서버’ 제도가 대한민국의 안보에 절대적으로 긴요하다는 점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되어야 한다. 특히 국제읍서버 제도가 본질적으로 병역대체제도와 반드시 연계될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적절한 논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국제읍서버는 여성 및 병역을 필한 자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에 대한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다. 또한 병역미필자를 국제읍서버로 활용한다 할지라도 3년의 무복무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고용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도 아직 불분명하다. 국제읍서버제도를 병역과 연계시킬지 아니면 자격증제도와 연계시킬지에 대한 명확한 정책결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5장 국제옵서버제도 정비 방안

제1절 도입

- 국제옵서버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체제는 앞서 제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근거 조문은 있으나 이행가능한 절차 및 내용의 불비로 인해 실제 법적 절차가 완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적 틀의 부족으로 인해 국제옵서버제도는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자체 사업일 뿐 법적 보장장치가 있는 제도라 보기 어렵다.
- 국제옵서버제도는 원양산업발전법에서 법적 근거를 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부 법령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관련 제도의 실행 방안을 신설할 경우 구체적인 시행 근거를 가지게 된다. 다만 국제옵서버제도를 어느 수준에서 입법화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국제옵서버제도는 국립수산물과학원 자체 사업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 과거 2002년부터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맡아서 운영하여 오던 국제옵서버선발 및 운영에 관한 절차는 원양산업발전법의 도입 이후 아무런 제도적 변화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아무런 연계 고리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편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정의)에서는 「6. “국제옵서버”란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 조에서 ‘국가가 지정한 자’라는 의미가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국가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인정한다는 의미인지 매우 모호하다.
- 예를 들어 ‘수산물질병관리사’는 ‘기르는어업육성법’ 제2조 정의에서 「“수산물질병관리사”라 함은 수산생물을 진료(사체의 검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산

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수산질병관리사는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 중 ‘면허’로써 해당 자격증이 없을 경우 직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해당 면허를 근거로 독자적인 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 그런데 현재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옵서버’는 국가가 지정한 자라 할지라도 그 외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하부 법령에서 특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면허’에 해당하는 자격증 제도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국제옵서버’를 국가가 지정한 특별한 ‘자격’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가가 지정한 자격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과 ‘국가공인자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국가기술자격증은 현재 해양수산분야 기술사 11종 및 기사이하(기능사 포함) 19종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각 부처별 개별법에 의해 정해진 자격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국가공인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이 자격증을 교부·관리하는 대신 국가가 공인한 자격을 의미한다. 국제옵서버가 자격으로써 국가가 인정한 자격으로서 운용되는 것을 근간으로 ‘국가가 지정한 자’라고 한 것은 국가공인이상의 자격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국제옵서버를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할 것인지 또는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해당 업무의 성격과 공적 기여 등의 사회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표 5-1〉 국가기술자격의 해양분야별 종목

직무분야 \ 등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16. 해양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잠수 항로표지	 수산양식 어로 잠수 항로표지

자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5.

제2절 국제옵서버 자격제도 도입방안

1. 필요성

- IATTC나 CCMLR같은 국제수산기구에서 운영되던 국제옵서버 제도가 WCPFC, IOTC 등의 국제수산기구까지 확대되면서 주요 조업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도 국제옵서버들은 우리 어선에 승선시켜야 하는 바 국제옵서버 자격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첫째, 국제옵서버 배치 의무화는 그간 국제옵서버 파견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국내 옵서버 양성제도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2008년 현재 양성된 국제옵서버는 총 19명이며, 그 중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11명이다. WCPFC에서 국제옵서버 승선 의무화 규정이 도입될 경우 1년에 해당 지역수산기구에 파견해야 할 국제옵서버의 인원이 30-40명을 상회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2012년 전체 어선 비율 5% 옵서버 승선의무를 정할 경우 최소 9명 정도가 필요하며, 3개월씩 승선교대시 최소 36명 정도가 필요하다. 연차적으로 최소 커버리지 비율이 상승할 경우, 즉 ICCAT나 CCSBT처럼 최대 10%까지 상승할 경우 70-80명의 국제옵서버가 필요하게 된다. 현재 과학원에서 매년 5명씩 양성하고 있는 국제옵서버 양성프로그램으로는 급변하고 있는 국제수산기구의 수요를 맞추기 힘든 상황이다.
- 둘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은 국립수산과학원이 해당 프로그램에 선발된 자와 단순 노무관계를 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의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단순한 과학원 내 자체 인력수급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다고 봐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가 지속적으로 국제옵서버 자격을 유지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자격도 없기 때문에 해당 이수자에 대한 법적 권리보호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 현재의 원양산업발전법의 시행령에 제시된 국립수산과학원장에 대한 동 제도의 포괄적 위임은 위법성이 있고 국립수산과학원장도 이에 필요한 법

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현재 제도내에서 국제옵서버는 국립수산과학원이 노무관계를 철회할 경우 아무런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채 국립수산과학원과의 단기노무관계에만 의존하게 되는 불완전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 현재의 불합리한 인력고용체계로는 향후 닥치게 될 국제수산기구의 국제옵서버 승선 의무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있는 국제옵서버를 양성하기 어렵다.

- 셋째, 국가옵서버제도의 국제기구 승인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공인자격의 도입이 급선무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부여하는 국제옵서버 자격증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바 국제적으로 공인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인증하는 국제옵서버라는 것은 법적 권리보호 장치가 없는 프로그램 하의 단순노무관계이므로 결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제도라 볼 수 없다. 우리나라가 외국인 옵서버의 국제옵서버 자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을 소지해야 하는 바 상호주의에 의해 우리나라 국제옵서버도 외국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하여 국가가 우리 국민인 국제옵서버의 자격을 공인해 주어야 한다.
- 넷째, 현재의 국제옵서버 양성프로그램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공인자격 프로그램도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국제옵서버 인력양성이 불가능하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체 사업 프로그램의 일부일 뿐인 현재의 국제옵서버 양성프로그램은 예산지원에 관한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원양산업법시행령에 의한 동제도의 포괄적 위임은 위법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장은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예산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원양산업발전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 주어야 한다. 2007년 도입된 ‘원양산업발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을 위한 농림수산부 장관의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조항도 전무한 상태이다. 2012년 WCPFC 국제옵서버 승선 의무화 규정이 실시될 경우 향후 3-4년 안에 국제옵서버를 수요에 맞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의 근거를 갖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국제옵서버가 수행하는 과학 및 감시감독 기능은 국제수산기구의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및 조업국으로서의 국가위상에 기여하는

공적기능이 매우 큰 바 국제옵서버 양성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국제옵서버에 대한 국제기구의 급격한 수요 증가에 대해 우리나라 외에도 일본도 실제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위한 체계적 국제옵서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은 현재 최대 50명 정도의 국제옵서버 파견 업무를 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향후 200명 이상의 국제옵서버 공급 요청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수산청이나 원양수산연구소에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부서가 전무하기 때문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국제수산기구의 옵서버 의무화 동향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위하여 일본도 일정한 옵서버 프로그램 담당 전문부서를 신설하고 국제옵서버의 모집, 고용, 파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수산컨설팅회사의 수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더 나아가 일본은 국제옵서버의 업무내용상 전문적인 수산지식이 풍부하여야 하며, 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지속될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과거 어선원 경험이 있는 자의 활용에 대해서 호의적이다. 국제옵서버의 업무 성격상 어선에서 3개월 정도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승선적성검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100명 단위를 넘어가는 국제옵서버의 파견 업무와 관리를 위해서는 미국·캐나다와 같이 일정기간 훈련 후 시험을 거쳐 선발하는 객관적인 선발방법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2. 국제옵서버의 자격제도화 방안

- 국제옵서버제도를 현재의 국립수산과학원의 단순노무계약 수준에 방치할 경우 국제수산기구의 국제옵서버 의무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현재 2007년에 도입된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 및 제21조 제3호에서는 ‘국제옵서버’를 국가가 지정하고 해당 인력을 선발하여 운영할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운영’에 대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명하고 있다.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이 어떠한 성질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해당 조항을 통해서 적어도 국가가 국제옵서버의 자격을 부여해 주고, 해당 자격을 갖춘 자들을 관리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농림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국제옵서버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세워 집행하여야 한다.

- 국제옵서버의 자격⁵⁾을 지정하는 방법은 크게 업무독점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능력인정형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⁶⁾ 업무독점형이라 함은 해당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서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면허형 자격과 의무고용형 자격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면허형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이미용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의무고용형은 전기기사, 가스안전기사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능력인정형은 해당 분야에 대한 일정한 기능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지 해당 자격이 없다고 그 업무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 또한 자격증에 대한 시행측의 주체별로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뉘는데 국가 자격은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의미하며, 민간자격은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운영·관리하는 자격을 의미한다. 국가자격은 국가가 법률로써 직접 또는 검정기관(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검정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자격제도이다. 민간자격은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운영·관리하는 제도로써 민간이 자격등록을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나 우수한 민간자격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공인민간자격과 그렇지 않은 순수민간자격으로 나뉠 수 있다.
- 국제옵서버제도를 자격제도화 할 경우 기본적으로 자국의 원양어로사업의 과학적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어업준수 및 감시의 기능까지 수행하게 되므로 수산자원, 해양환경, 국제어업규정 등에 해박해야 하는 바 국제옵서버제도에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국제옵서버로 고용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국제옵서버 자격을 면허와 자격 중 면허의 형식으로 발급할 경우 면허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경쟁회피적 성격 때문에 해당 직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

5) 우리나라에서 자격은 자격기본법에서 “법적으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평가, 인정된 지식, 기술의 습득 정도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으로 정의됨
6) 자격제도와 관련된 주요법률은 ‘국가기술자격법’과 ‘자격기본법’이 있음.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외 각 부처의 개별법에 의해 규정될 수도 있음

우수한 국제옵서버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다만 면허와 같은 높은 진입장벽은 아니더라도 자격소지를 통해 해당 자격소지자의 전문화 및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자격증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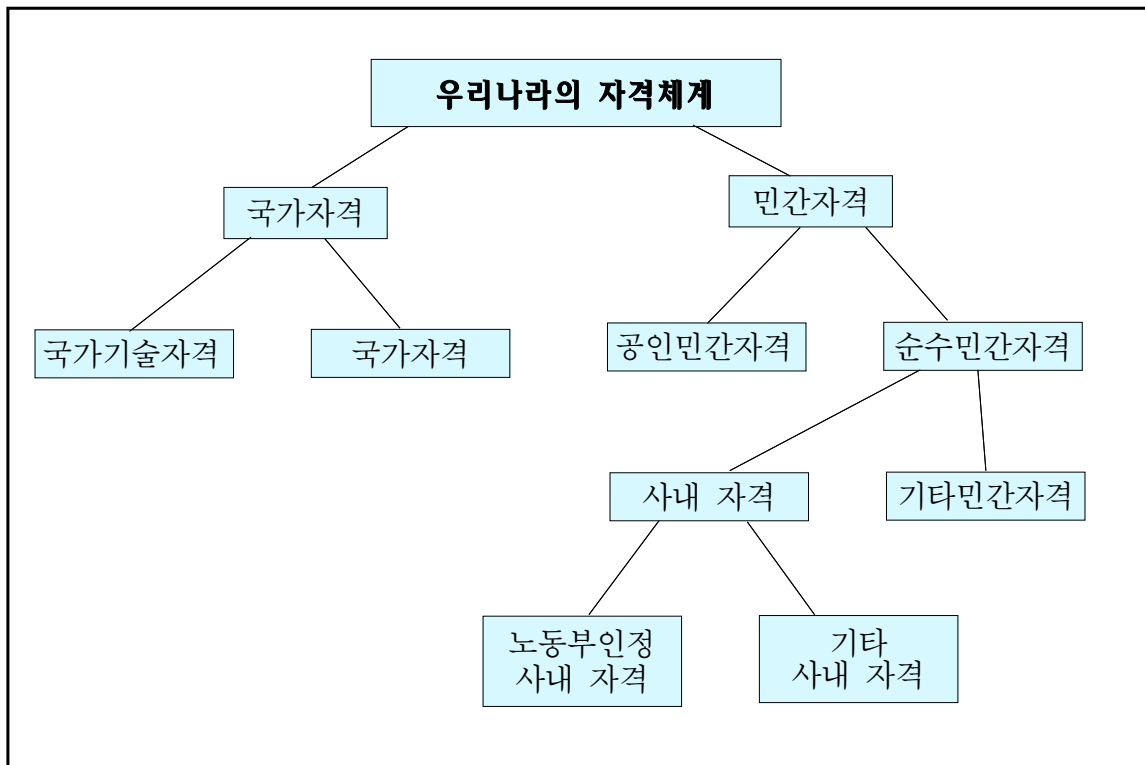
- 국제옵서버의 공공적 성격과 주요 활동지가 외국 또는 공해라는 특수한 지역이 될 것이므로 국가자격⁷⁾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된다. 민간자격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자격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근간하나 공인민간자격은 민간자격이나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으로 국가기술자격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발행된 자격증, 즉 외국인의 국제옵서버 자격증은 국내법상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발급한 자격에 속하여 민간자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인정하는 국제옵서버로서 향후 국적선에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국내법에서 ‘국가가 지정한 자’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외국인 국제옵서버 자격을 국내에서 공인해 주어야 승선이 가능할 수 있다.
- 만약 향후 원양산업발전법의 국제옵서버제도를 활성화시켜 원양어선은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킬 수 있다고 할 경우 국내법에서 인정된 국제옵서버이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국제옵서버 승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국제옵서버 운용에 관한 절차규정이 마련될 경우 외국인이 소지한 국제옵서버의 국내 수용 및 국가 승인 절차규정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 국제옵서버제도는 원양산업발전법이라는 개별법령에 근거한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바 국가자격으로 인정하여 국제수산기구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할 필요가 있다. 자격을 인정(accreditation)받기 위해서는 통상 4가지의 방법을 통해야 한다.
 - 첫째, 관계기관에 의한 검정을 통해서 인정된다. 우리나라나 일본 등에서 일반적

7) 국가기술자격을의 자격등급체계는 기술기능계 분야의 경우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5등급 체계로 나뉘어짐.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등급에 따라 다르나 산업기사 이상은 학력 또는 경력요건이 있고, 일부 자격은 반드시 일정한 학력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음.

으로 시행되는 방법으로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민간이 별도의 자격시험을 치루어 합격자에게 관련 자격증을 부여하는 형태이다.

- 둘째, 교육훈련과정의 이수를 통하여 인정된다. 일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자격증취득을 위한 별도의 시험이 없이 교육훈련 이수증 또는 졸업증이 자격증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수자격은 교육훈련과정의 수료시에 사실상의 자격시험에 준하는 엄정한 검정과정을 거쳐 이에 합격한 자에게만 수료증을 교부함으로써 이수자격을 공신력과 사회적 통용성을 확보하게 된다. 독일과 호주가 이러한 이수자격을 지배적으로 시행하는 나라이다.
- 셋째, 일 또는 현장경력을 통해서 인정된다. 현장경력이나 작업경험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공식적인 자격에 부응하는 직무능력이 인증된다면 해당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최근에 강조되는 방법이다.
- 넷째, 비공식적 교육훈련 등 선행학습 과정을 통해서 인정된다. 현장에서의 교육훈련 경험이 주로 반영되는 것이기에 일 또는 현장경력 인정자격과 연계된 형태가 많다.

〈그림 5-1〉 우리나라의 자격체계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 옵서버제도의 통합관리 방안

- 국제옵서버제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소한 공인민간자격으로 제도화하여 국가가 해당 자격소지자에 대한 공공적 성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국제옵서버제도에 대해서는 최근 도입된 ‘원양산업발전법’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회 승선하는 최대기간을 3개월 정도로 잡을 경우 6개월 이상 배를 타기 어렵고 매년 정기적인 업무구조가 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따라서 국제옵서버가 원할 경우 국내 TAC 옵서버 요원으로 전환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TAC옵서버 요원제도 또한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옵서버 운영체계를 감안할 경우 국내외를 통합한 옵서버제도의 통합관리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제3절 국제옵서버제도 법률체제 정비 방안

1. 제도적 정비 방안

- 현재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제옵서버’에 관한 내용은 제2조 6 및 제21조 3, 두 조항과 동시행령의 권한위임 조항밖에 없다. 따라서 이 두 조항을 근거로 국제옵서버 자격제도를 법적 근거에 의거한 제도로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농림수산물부에서 2004년부터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제도와 비교하여 검토해 보자. 이 제도는 개별법에서 인정한 국가자격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근간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를 선발하고 필요한 자금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농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의 2 내지 7)
- 원양산업발전법 또한 농산물품질관리법처럼 국제옵서버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선발절차를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보완하지 못함으로써 구체적인 제도 활성화 및 필요한 예산지원 자체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이 점은 빠른 시일 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권한위임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포괄위임입법의 형태를 띠고 있는 바 문제의 소지가 크다. 권한위임을 한다 하더라도 원양산업발전법에서 국제옵서버제도 시행에 있어 지원자가 될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시한 후 이행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정해야 한다.
- 그러나 이 원양산업법 및 시행령은 권한위임의 근거없이 이를 다시 국립수산물학원장에게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체계상 흠결있는 상태이다. 또한 이러한 법체계를 근거로 원양산업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국제옵서버제도의 자격제도화는 불가능하다.
- 따라서 원양산업법을 포함한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모두 개정되어야 한다. 원양

산업법에서는 현재의 정의 및 제도도입만 규정한 조항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의 범위, 자격증 제도의 명시, 시험 및 자격부여, 자격취소, 자격지원 자격 제한(연령, 교육배경 등), 예산지원 근거를 최소한 명기해야 한다. 원양산업법 시행령에서는 국제옵서버 자격 시험 실시, 방법, 선발자 공고, 해당 자격의 관리·운영 기관 선정과 권한위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런데 여기서 국제옵서버 제도의 고유한 업무특성을 고려한 절차를 포함시켜야 한다. 우선 국제옵서버가 활동하는 업무공간이 해외의 해상이라는 점과 장기간 1-3개월 정도 머물러야 하는 특징을 고려한다. 해상근무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격시험과정에 승선실습과정을 의무적으로 수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해상에서의 안전보장 및 신변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법률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국제옵서버의 승선가능성 및 우리나라 국제옵서버의 타국어선 승선가능성도 감안하여 제도보장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제옵서버제도가 국제수산기구의 결의에 의한 의무화 조치에 의한 것임을 감안할 때 국제수산기구의 수요에 맞추어 적절한 인력양성계획과 예산지원을 정부에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표 5-2〉 원양산업발전법의 국제옵서버제도 현황

	원양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국제옵서버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권한위임 	

〈표 5-3〉 농산물품질관리법의 농산물품질관리사 현황

	농산물품질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품질관리사 ▪ 직무 ▪ 시험·자격부여 등 ▪ 준수사항 ▪ 자격취소 ▪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시험 실시 ▪ 자격시험 방법·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 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관리위원회 ▪ 합격자의 공고 등 ▪ 권한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 응시원서 및 수수료 ▪ 자격증 교부

2. 법률정비 초안

- 원양산업발전법은 제2조 및 제21조에서 국제옵서버 및 그 제도 실시에 대해 예정해 두고 있으나 아무런 이행규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명실공히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국가자격증화 하는 제도정비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기본적으로 ‘국제옵서버’는 국가가 지정하는 자이지 국가와 단순노무관계를 맺음으로써 일용직 취급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현재 취하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장과의 채용계약은 단순노무계약이자 일용직 계약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정비차원에서 자격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국제옵서버를 국가자격제도로 승격시켜 운영하게 될 경우 이들의 자격발생 및 상실, 자격응시시험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격발생의 전제요건으로 국제옵서버의 특성상 해상근무를 기초로 하므로 해상근무에 적합한 신체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승선실습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국제옵서버가 수행할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 명시하여 이들의 업무가 과도하게 또는 불합리한 명령에 의해 변경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들이 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될 해당 국제수산기구가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되 기본적인 업무는 국제수산기구의 결의 또는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단기과학조사 사업을 국제옵서버에게 맡길 경우 국가간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 현재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위임으로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업무는 매우 불분명하여 해당 기관의 장, 개인적인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별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양산업발전법체제에 관한 개정안 초안은 부록 2 참조>

제4절 국제옵서버제도 운영 정비 방안

1. 관리감독체제의 정비

- 국제옵서버 제도를 양성화할 경우 국제수산기구 수요를 해당 수역에서 커버리지를 20%까지 높여갈 경우 200~300여명 수준까지 국제옵서버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국제옵서버를 수요에 맞추어 모두 완전고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대 국제옵서버 자격증 소지자 중 20~30%는 유희인력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국제옵서버 자격 소지자가 많아질 경우 이 제도를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할 기관이 필요하다.
- 현재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국제옵서버 관련 모든 행정관리 기능을 전담하고 있으나 실제 국립수산과학원 인력 중 국제옵서버 업무 전담자는 1명에 불과하며, 그 외 해외자원팀 소속 연구자들은 자원관리 관련 연구부담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에서는 전문수산컨설팅회사를 운영하여 평상시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을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국제옵서버를 공급하는 기능을 전담하고 있다.
- 그런데 외국의 민간 수산컨설팅 회사를 도입하는 것이 업무효율성과 예산절약 차원에서 바람직한지 비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수산컨설팅회사가 민간차원에서 국제옵서버 운영만을 위하여 설립될 경우 업계 진출 요구가 얼마나 클 것인가를 예상할 경우 실제 1개의 민간기업만 존재하거나 이익을 보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즉 실질적인 독점회사 유지 외에 대안이 없을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운영관련 제반경비를 계약에 의해서라 할지라도 독점적 회사 1개에 지원한다는 것은 시장경쟁원리 맞지 않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옵서버 경비를 상당부분 지원할 경우 국가가 지정한 민간협회 또는 정부기관에서 관리운영을 전담하는 것이 공적 기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국제옵서버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원양협회, 해양수산물기술센터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재 국제옵서버 선발 및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실제 운영에 대해 포괄위임받고 있는 기관이다.
- 그러나 향후 국제옵서버제도가 체계화된 자격제도를 통해 운영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이 자격제도 자체를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 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과 같은 경우를 살펴볼 때 농산물품질관리센터가 해당 자격 선발에 대해 2007년까지 운영해 오다가 2008년부터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그 선발에 관한 전반적 업무를 위탁한 것을 보면 자격제도의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운영과 해당 자격 소지자의 고용관계에 있는 기관과 일치시키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즉 국립수산과학원이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별도의 시험운영기관을 두어 관리하는 것보다 이미 국가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그 선발 관련한 일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선발과정에서 객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격시험절차 및 시험선발에 관한 운영은 다른 기타 국가자격시험과 마찬가지로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그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그런데 해당 자격 소지자의 모집과 계약 및 교육에 있어 외국과 같이 민간컨설팅 회사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향후 국제수산물기구의 옵서버 승선 의무화 비율이 계속 높아져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옵서버 고용 수준이 매년 200명을 넘어갈 경우 민간컨설팅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민간컨설팅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제옵서버의 비용 전반에 관해 어느 쪽에서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실제 정부가 모든 국제옵서버 양성에 관한 비용을 지불할 경우 과연 민간컨설팅 제도를 별도로 두어 운영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두고 결국 비용의 추가지출만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실제 국립수산과학원에 별도의 센터를 만들어 국제옵서버 운영의 전반을 맡길 경우 정부예산으로 모집, 계약, 운영, 교육 및 재교육 전반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리하게 될 것이다.

- 민간컨설팅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게 될 경우 민간컨설팅 회사는 모집, 계약, 운영까지의 업무를 주관하게 될 것인데 결국 교육 및 재교육과 같은 실질적인 업무는 국립수산물과학원이 맡게 될 것이다. 또한 민간컨설팅제도를 통해 결국 정부예산이 민간에게 넘어가게 되는 과정에서 제도화를 위한 기본적인 기반조성 비용이 추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추가 비용발생에도 불구하고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제도관리측면에서는 정부 조직 내 조직을 추가하는 것보다 민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운영체계를 가져올 수도 있다.
- 원양협회는 앞서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적합성에 관해 논의하면서 진행되어 온 바와 마찬가지로 자격시험의 관리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그 업무를 일괄 위임하는 최근 경향을 반영하는 편이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별도의 원양협회를 자격관리기관으로 정할만한 이유가 있는지는 향후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국제옵서버의 모집에서부터 시작되는 운영체제에 대해서는 원양협회가 위에서 언급한 민간컨설팅제도를 대신한다면 매우 효율적인 업무 분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이미 원양협회는 국제옵서버 제도에 관해 매우 깊은 이해가 있는 기관으로 국제옵서버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입장을 가장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바 국제옵서버의 모집에서부터 계약,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충분하다. 또한 별도의 민간컨설팅 제도의 창설을 위한 추가 비용의 발생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바 민간컨설팅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이 기대된다.
- 해양수산물기술센터는 원양협회와 마찬가지로 추가비용 지출이 최소화될 수 있으나 원양협회에 비해 원양어업과 국제옵서버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2. 예산확보 방안

- 예산의 소요는 과거 국립수산물과학원에 일임하여 소인원을 양성하던 체제와 달리 기본적으로 200명 이상의 국제옵서버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 앞으로 원양산업발전법체제가 개정될 경우 전담부서 설치 및 교육프

로그랩 개발, 시험제도 개발, 국제 옵서버 인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예산확보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기존의 국제옵서버 인원 19명을 최대 활용한다는 전제에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2010년으로 예상할 경우 2010년부터 향후 5년간 200명의 국제옵서버를 양성하려는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소요금액을 추정해 본 바 아래 <표 5-4>과 같다. 이 표에 따르면 실제 2010년부터 국제옵서버 인원을 1차년 40명, 2차년 70명, 3차년 110명 정도로 첫해 20명 모집에서 매년 10명씩 추가 모집하여 2014년까지 200명을 공급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이들의 순인건비를 5천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첫해 20억에서 시작하여 2014년에는 최대 100억대의 인건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소요금액이 늘어날 것이다. 그 외 전담조직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2010년 2억 1천만원에서 2014년 3억 5천만 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결국 국제옵서버 제도 운영에서 가장 많은 예산소요분야는 국제옵서버 인건비부 분으로 20억에서 시작한 인건비가 향후 100억대로 증가할 경우 모든 예산을 정부 지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 부담의 원칙으로 원양선사에 전가시킬지 아니면 일부 분담체제로 갈 것인지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표 5-4> 예산소요예상

(단위 : 만원)

내역	세부내역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담부서 운영	인건비(2~5명)	6,000	9,000	12,000	15,000	15,000
	시설운영비	4,000	4,000	5,000	5,000	6,000
옵서버 운영	옵서버 선발	2,000	2,000	2,000	2,000	2,000
	옵서버 인건비	40명 200,000	70명 350,000	110명 550,000	150명 750,000	200명 1,000,000
옵서버 교육	교재 개발	2,000	2,000	2,000	2,000	2,000
	교수진 인건비	2,000	3,000	4,000	4,000	5,000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5,000	5,000	5,000	5,000	5,000
총	계	221,000	375,000	578,000	781,000	1,035,000

〈표 5-5〉 원양선사의 국제옵서버 인건비 부담 증가율

(단위 : 만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0%	정부(90%)	180,000	245,000	495,000	675,00	990,000
	원양선사(10%)	20,000	35,000	55,000	75,000	100,000
20%	정부(80%)	160,000	280,000	440,000	600,000	800,000
	원양선사(20%)	40,000	70,000	110,000	150,000	200,000
30%	정부(70%)	140,000	245,000	385,000	525,000	700,000
	원양선사(30%)	60,000	105,000	165,000	225,000	300,000
40%	정부(60%)	120,000	210,000	230,000	400,000	600,000
	원양선사(40%)	80,000	140,000	220,000	300,000	400,000
50%	정부(50%)	100,000	175,000	275,000	375,000	500,000
	원양선사(50%)	100,000	175,000	275,000	375,000	500,000
총 계		200,000	350,000	550,000	750,000	1,000,000

- <표 5-5>에서 제시된 예산분담비율을 근거로 WCPFC 수역에서 2012년 약 35명 정도 채용할 경우 전체 17.5억원이 소요되는데 10%의 경우 1.75억원이 원양선사 부담이 될 것이나 최대 50%일 경우 8.75억원이 원양선사 부담이 될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수역에 진출하고 있는 원양선사가 분담하여 각출할 경우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위의 <표 5-4>과 <표 5-5>의 예산소요예산액과 달리 2012년부터 WCPFC의 국제옵서버 승선의무화 비율이 도입될 경우 자격시험을 통한 국제옵서버 배출인원과 실제 국제옵서버 채용 인원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소요는 <표 5-4>에 제시된 예산보다 적게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매년 자격시험을 통한 국제옵서버를 양성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정부가 매년 고용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국제옵서버 자격 소지자를 양성한 후 각 국제지역수산기구의 국제옵서버 승선비율 의무화 경향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록 1. 국제유통서버 관련법과 농산물품질관리사의 관련법 구조 비교

가.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내용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제유통서버”란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정의	제13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⑥ 품질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1조 (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외수산자원조사, 원양어업 관련 연구와 과학기술의 진흥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2.29> 3. 국제유통서버 프로그램운영	제도 운영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의2 (농산물품질관리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26]	제도 운영

	원양산업발전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내용		<p>제29조의3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산물의 등급판정 2.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업무[본조신설 2002.12.26] 	업무범위
		<p>제29조의4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자격부여 등) ①농산물품질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26]</p> <p>제29조의5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①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②농산물품질관리사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2.12.26]</p>	시험 및 자격 부여 골격

	원양산업발전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내용			<p>제29조의5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①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②농산물품질관리사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p> <p>[본조신설 2002.12.26]</p>	준수사항
			<p>제29조의6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취소)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 2. 제34조의2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p> <p>[본조신설 2002.12.26]</p>	자격취소
			<p>제29조의7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등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산지·소비지 유통시설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본조신설 2002.12.26]</p>	예산지원

나. 시행령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내용	제19조 (권한의 위임)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운영	기관위임 권한위임	제30조의2 (자격시험의 실시) 법 제2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3.7.29]	
			제30조의3 (자격시험의 방법·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①자격시험은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은 다음 각호의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자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령 및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령 2. 원예학개론(수확 후의 품질관리론을 포함한다) 3. 농산물유통론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내용		기관위임 권한위임	<p>③제2차 실기시험은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를 시험과목으로 하여 실시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제2차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6.1.16></p> <p>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당해 자격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자격시험의 시행일부터 2년간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7.29]</p>	
			<p>제30조의4 (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관리위원회) ① 자격시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시자격 및 자격시험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내용		<p>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농산물의 유통 및 품질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16, 2008.2.29></p> <p>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다음 위원회의 구성일 전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8.2.29></p> <p>④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03.7.29]</p>
		<p>제30조의7 (합격자의 공고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그 명단을 자격시험의 시행후 4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7.29]</p>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내용		<p>제32조 (권한의 위임)</p> <p>③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7.13, 2003.7.29, 2006.1.16, 2007.12.6, 2008.2.29></p> <p>13.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수립</p> <p>14. 법 제2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취소</p> <p>15. 제30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교부</p>

다. 시행규칙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44조의2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법 제29조의3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3.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후의 품질관리기술 지도 2. 농산물의 선별·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용·관리 3. 농산물의 선별·포장 및 브랜드개발 등 상품성향상 지도 4. 포장농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5. 농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본조신설 2003.9.25]
내용		<p>제44조의3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영 제3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p> <p>②영 제3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차 필기시험 : 3만원 2. 2차 실기시험 : 5만5천원 <p>③영 제30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각각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영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위원회에서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한다. <신설 2006.1.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원서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3.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4. 시험시행 전일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3.9.25]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내용		<p>제44조의4 (자격증 교부 등 <개정 2006.1.25>) ①영 제30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행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p> <p>③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이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5>[본조신설 2003.9.25]</p>

부록 2.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원양산업발전법		비고
내용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제옵서버”란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정의	유지
	제21조 (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외수산자원조사, 원양어업 관련 연구와 과학기술의 진흥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2.29> 3. 국제옵서버제도운영	제도 운영	용어개정 프로그램→제도
	제21조의1 (국제옵서버의 직무) 국제옵서버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국제수산기구가 국제옵서버의 직무로 지정한 과학조사 및 어업감시감독 2.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정한 과학조사 및 어업감시감독 3. 기타 일시적인 국제수산기구의 필요에 의해 지정된 직무	직무범위	신설
	제21조의2 (국제옵서버의 자격부여 등) ① 국제옵서버가 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옵서버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제옵서버 자격을 부여하기 전에 반드시 승선실습을 통하여 국제옵서버가 될 수 있는 신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확인하여야 한다.	자격시험	신설 승선실습의무화

	원양산업발전법		비고
내용	제21조의 3 (국제옵서버의 준수사항) ① 국제옵서버는 원양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국제수산기구의 자원보존조치와 직무관련 행동규범을 준수하여 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②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장장치를 직접 확인하고 해당 어선의 선장에게 필요한 안전보장 절차를 알린다. ③ 자격증은 항시 휴대하되 눈에 잘 띄도록 부착하고 해당자격증을 대여할 수 없으며, 만약 그러한 일이 발견될 시에는 바로 직무수행을 정지한다.	준수사항	신설
	제21조의4 (국제옵서버의 자격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제옵서버”자격을 취소한다. 1. 국제옵서버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 2. 국제옵서버의 자격을 정당하게 취득하였으나 자의로 타인에게 대여한 자 2. 국제법이 정한 준거지법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으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는 자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옵서버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자격취소	신설
	제21조의5 (국제옵서버 제도를 위한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제옵서버 선발을 위한 시험, 교육, 기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예산지원	신설(선택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 예산지원 항목 상세화)

부록 3. 각지역수산위원회 국제옵서버운영지침

가. ICCAT REGIONAL OBSERVER PROGRAMME

1. Each CPC shall require carrier vessels included in the ICCAT record of vessels authorized to receive transshipments in the ICCAT area and which transship at sea, to carry an ICCAT observer during each transshipment operation in the Convention area.
2. The Secretariat of the Commission shall appoint the observers and shall place them on board the carrier vessels authorized to receive transshipments in the ICCAT area from LSTLVs flying the flag of Contracting Parties and of non-Contracting Cooperating Parties, Entities or Fishing Entities that implement the ICCAT observer program.

Designation of the observers

3. The designated observers shall have the following qualifications to accomplish their tasks:
 - i) sufficient experience to identify species and fishing gear;
 - ii) satisfactory knowledge of the ICCAT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 iii) the ability to observe and record accurately;
 - iv) a satisfactory knowledge of the language of the flag of the vessel observed.

Obligations of the observer

4. Observers shall:
 - a) have completed the technical training required by the guidelines established by ICCAT;
 - b) be nationals of one of the CPCs and, to the extent possible, not of the flag State of the receiving carrier

vessel;

- c) be capable of performing the duties set forth in point 5 below;
- d) be included in the list of observers maintained by the Secretariat of the Commission;
- e) not be a crew member of an LSTLV or an employee of an LSTLV company.

5. The observer tasks shall be in particular to:

- a) monitor the carrier vessel's compliance with the relevant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by the Commission. In particular the observers shall:
 - i) record and report upon the transshipment activities carried out;
 - ii) verify the position of the vessel when engaged in transshipping;
 - iii) observe and estimate products transshipped;
 - iv) verify and record the name of the LSTLV concerned and its ICCAT number;
 - v) verify the data contained in the transshipment declaration;
 - vi) certify the data contained in the transshipment declaration;
 - vii) countersign the transshipment declaration;
- b) issue a daily report of the carrier vessel's transshipping activities;
- c) establish general reports compiling the information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this paragraph and provide the captain the opportunity to include therein any relevant information.
- d) submit to the Secretariat the aforementioned general report within 20 days from the end of the period of observation.
- e) exercise any other functions as defined by the Commission.

6. Observers shall treat as confidential all information with respect to the fishing operations of the LSTLVs and of the LSTLVs owners and accept this requirement in writing as a condition of appointment as an observer;

7. Observers shall comply with requirements established in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flag State which exercises jurisdiction over the vessel to which the observer is assigned.

8. Observers shall respect the hierarchy and general rules of behavior which apply to all vessel personnel, provided such rules do not interfere with the duties of the observer under this program, and with the obligations of vessel personnel set forth in paragraph 9 of this program.

Obligations of the flag States of carrier vessels

9. The responsibilities regarding observers of the flag States of the carrier vessels and their captains shall include the following, notably:
 - a) Observers shall be allowed access to the vessel personnel and to the gear and equipment;
 - b) Upon request, observers shall also be allowed access to the following equipment, if present on the vessels to which they are assigned, in order to facilitate the carrying out of their duties set forth in paragraph 5:
 - i) satellite navigation equipment;
 - ii) radar display viewing screens when in use;
 - iii) electronic means of communication;
 - c) Observers shall be provided accommodations, including lodging, food and adequate sanitary facilities, equal to those of officers;
 - d) Observers shall be provided with adequate space on the bridge or pilot house for clerical work, as well as space on deck adequate for carrying out observer duties; and
 - e) The flag States shall ensure that captains, crew and vessel owners do not obstruct, intimidate, interfere with, influence, bribe or attempt to bribe an observer in the performance of his/her duties.

The Secretariat, in a manner consistent with any applicable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is requested to provide to the flag State of the carrier vessel under whose jurisdiction the vessel transhipped and to the Flag CPC of the LSTLV, copies of all raw data, summaries, and reports pertaining to the trip.

The Secretariat shall submit the observer reports to the Compliance Committee and to the SCRS.

Observer fees

- a) The costs of implementing this program shall be financed by the flag CPCs of LSTLVs wishing to engage in transshipment operations. The fee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total costs of the program. This fee shall be paid into a special account of the ICCAT Secretariat and the ICCAT Secretariat shall manage the account for implementing the program;
- b) No observer shall be assigned to a vessel for which the fees, as required under subparagraph a), have not been paid.

나. IMPLEMENTATION PROCEDURES FOR THE OBSERVER PROGRAM OF IATTC

PANAMA CITY (PANAMA)

24-27 JUNE 2008

RESOLUTION C-08-03

IMPLEMENTATION PROCEDURES FOR THE OBSERVER PROGRAM FOR AT-SEA TRANSSHIPMENTS BY LARGE-SCALE TUNA LONGLINE FISHING VESSELS

The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IATTC):

Expressing the need to implement a Program for at-sea transshipments by large-scale tuna longline fishing vessels (LSTLFVs),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 C-06-04;

Resolves as follows;

1. An informal Ad Hoc Working Group shall be established, composed primarily of those CPCs that have experience in observer programs for at-sea transshipments by LSTLFVs.
2. The first meeting of the Working Group shall be held on the occasion of the Northern Committee of the WCPFC in Tokyo from 11 to 13 September 2008.
3. The Director shall evaluate the approximate costs of implementing the observer program for carrier vessels established in paragraph 16 of Resolution C-06-04, which is similar to that implemented in ICCAT, by means of a service contract with an external agency, and shall report the results to the first meeting of the Working Group.

4. The Working Group shall decide how the costs of the program shall be shared among the participating CPC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from 1 January 2009.

5. Each CPC that participates in the at-sea transshipment program shall submit to the Director, by 30 September of each year, the plans of transshipment, including the number of LSTFLVs that will participate in at-sea transshipment for the following year and the number of carrier vessel cruises, for the Director to calculate the accurate cost of the program and to arrange for observers and other associated matters.

6. The Director shall evaluate the costs of implementing the observer program for carrier vessels by expanding the IATTC observer program under the Agreement on the International Dolphin Conservation Program (AIDCP), i.e., the Director shall be in charg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observer program, including the hiring, training, dispatch, and management of the observers aboard carrier vessels. The Director shall submit the results of this evaluation to the members of the Working Group one month prior to the IATTC Annual Meeting in 2009. The Working Group shall examine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and decide whether to recommend to the IATTC Annual Meeting in 2009 that the observer program be changed from the service contract with an external agency to the expanded IATTC observer program.

7. The IATTC Annual Meeting in 2009 shall consider a decision on that change.

다. CCSBT REGIONAL OBSERVER PROGRAM

1. Each Member and Cooperating Non-Member shall require carrier vessels included in the CCSBT Record of Carrier Vessels authorised to receive transshipments at sea and which transship at sea, to carry a CCSBT observer during each transshipment operation at sea.
2. The Executive Secretary shall appoint the observers and shall place them on board the carrier vessels authorized to receive transshipments at sea from LSTLVs flying the flag of Members and Cooperating Non-Members that implement the CCSBT Regional Observer Program.

Designation of the observers

3. The designated observers shall have the following qualifications to accomplish their tasks:
 - a) sufficient experience to identify species and fishing gear;
 - b) satisfactory knowledge of the CCSBT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 c) the ability to observe and record information accurately;
 - d) a satisfactory knowledge of the language of the flag of the vessel observed.

Obligations of the observer

4. Observers shall:
 - a) have completed the technical training required by the guidelines established by CCSBT, or the guidelines established by IOTC or ICCAT providing that the observers have also been trained in relation to paragraphs 3(a) . (c);
 - b) to the extent possible, not be nationals of the flag State / Fishing Entity of the receiving carrier vessel;
 - c) be capable of performing the duties set forth in point 5 below;

- d) be included in the list of observers maintained by the Secretariat of the Commission;
 - e) not be a crew member of an LSTLV or an employee of an LSTLV company.
5. The observer tasks shall be in particular to:
- a) while on the Fishing Vessel intending to transship to the carrier vessel and before the transshipment takes place:
 - i) check the validity of the fishing vessel's authorisation or licence to fish for SBT;
 - ii) check and note the total quantity of catch on board, and the quantity to be transferred to the carrier vessel;
 - iii) check that the VMS is functioning and examine the logbook;
 - iv) verify whether any of the catch on board resulted from transfers from other vessels, and check documentation on such transfers;
 - v) in the case of an indication that there are any violations involving the fishing vessel, immediately report the violations to the carrier vessel master; and
 - vi) report the results of these duties on the fishing vessel in the observer's report.
 - b) monitor the carrier vessel's compliance with the relevant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by the Commission. In particular the observers shall:
 - i) record and report upon the transshipment activities carried out;
 - ii) verify the position of the vessel when engaged in transshipping;
 - iii) observe and estimate products transshipped;
 - iv) verify and record the name of the LSTLV concerned and its CCSBT Authorised Vessel List number;
 - v). verify the data contained in the transshipment declaration;
 - vi) certify the data contained in the transshipment declaration;
 - vii) countersign the transshipment declaration;
 - c) issue a daily report of the carrier vessel's trans-shipping activities;
 - d) establish general reports compiling the information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this paragraph and provide the captain the opportunity to include therein any relevant information.
 - e) submit to the Secretariat the aforementioned general report within 20 days from the end of the period of observation.
 - f) exercise any other functions as defined by the Commission.

6. Observers shall treat as confidential all information with respect to the fishing operations of the LSTLVs and of the LSTLVs owners and accept this requirement in writing as a condition of appointment as an observer;
7. Observers shall comply with requirements established in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flag State / Fishing Entity which exercises jurisdiction over the vessel to which the observer is assigned.
8. Observers shall respect the hierarchy and general rules of behavior which apply to all vessel personnel, provided such rules do not interfere with the duties of the observer under this program, and with the obligations of vessel personnel set forth in paragraph 9 of this program.

Obligations of the Flag State / Fishing Entities of carrier vessels

9. The responsibilities regarding observers of the flag State / Fishing Entities of the carrier vessels and their captains shall include the following, notably:
 - a) Observers shall be allowed access to the vessel personnel and to the gear and equipment;
 - b) Upon request, observers shall also be allowed access to the following equipment, if present on the vessels to which they are assigned, in order to facilitate the carrying out of their duties set forth in paragraph 5:
 - i) satellite navigation equipment;
 - ii) radar display viewing screens when in use;
 - iii) electronic means of communication;
 - c) Observers shall be provided accommodation, including lodging, food and adequate sanitary facilities, equal to those of officers;
 - d) Observers shall be provided with adequate space on the bridge or pilot house for clerical work, as well as space on deck adequate for carrying out observer duties; and
 - e) The flag State / Fishing Entities shall ensure that captains, crew and vessel owners do

not obstruct, intimidate, interfere with, influence, bribe or attempt to bribe an observer in the performance of his/her duties.

10. The Executive Secretary, in a manner consistent with any applicable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is requested to provide to the flag State / Fishing Entity of the carrier vessel under whose jurisdiction the vessel transshipped and to the Flag Member or Cooperating Non-Member of the LSTLV, copies of all raw data, summaries, and reports pertaining to the trip.

Obligations of LSTLV during transshipment

11. Observers shall be allowed to visit the fishing vessel if the observer's safety can be reasonably assured given the weather and sea conditions, and access shall be granted to personnel and areas of the vessel necessary to carry out their duties set forth in paragraph 5.
12. The Executive Secretary shall submit the observer reports to the Compliance Committee and to the Scientific Committee.

Observer fees

13. The costs of implementing this program shall be financed by the flag Members and Cooperating Non-Members of LSTLVs wishing to engage in transshipment operations. The fee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total costs of the program. This fee shall be paid into a special account of the CCSBT Secretariat and the CCSBT Secretary shall manage the account for implementing the program.
14. No observer shall be assigned to a vessel for which the fees, as required under paragraph 13, have not been paid.

